



중견기업의 혁신과 도전

-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13:30 ~ 17:30
- 장 소 : 무역센터 18층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제5심리실)
- 주 최 :  한국중견기업학회 **KCAB** 대한상사중재원
- 후 원 : **KCAB** 대한상사중재원



2023년 (사)한국중견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중견기업의 혁신과 도전

-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13:30 ~ 17:30
- 장 소 : 무역센터 18층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제5심리실)
- 주 최 :  한국중견기업학회 **KCAB** 대한상사중재원
- 후 원 : **KCAB** 대한상사중재원

2023년 (사)한국중견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중견기업의 혁신과 도전

- (주최) (사)한국중견기업학회, 대한상사중재원
- (후원) 대한상사중재원
- (일시) 2023년 3월 24일(금) 13:30 ~ 17:30
- (장소) 무역센터 18층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제5심리실)

전체사회: 권응수 교수(건국대학교, 연구이사)

등록 및 개회식 13:40~14:00	개회사 :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 축사 :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1주제 발표 14:00~14:30	중견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정책펀드 및 민간펀드를 중심으로- 배승욱 박사(벤처시장연구원)
2주제 발표 14:30~15:00	중견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3주제 발표 15:00~15:30	중견기업 연합 CVC : 선보엔젠파트너스 사례 강신형 교수(충남대 경영학부)
4주제 발표 15:30~16:00	제조혁신의 시대,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지원방안 오윤환 단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
16:00~16:20	- Coffee Break -
종합토론 16:20~17:20	좌장 : 표정호 석좌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토론 : 신영수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안태준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 용 부연구위원 (산업연구원) 강형구 교수 (한양대 경영대학)
17:20	폐회사 :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

한국중견기업학회

목 차

제1주제

- ◆ 중견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9
-정책펀드 및 민간펀드를 중심으로-

발표: 배승욱 박사(벤처시장연구원)

제2주제

- ◆ 중견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27

발표: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 ◆ 중견기업 연합 CVC : 선보엔젠파트너스 사례 65

발표: 강신형 교수(충남대 경영학부)

제4주제

- ◆ 제조혁신의 시대,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지원방안 75

발표: 오윤환 단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

종합토론

- ◆ 토론: 강형구 교수 (한양대 경영대학) 93

주제발표 I

중견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정책펀드 및 민간펀드를 중심으로-

발표 : 배승욱 박사(벤처시장연구원)

중견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정책펀드 및 민간펀드를 중심으로-

벤처시장연구원 배승욱 대표



1

I. 서론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3년 1월 16일 새정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발표함

- 1)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국정과제 17)” 이행의 일환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실물 경제 위기 극복과 튼튼한 산업생태계 구축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기업 수 1만개, 수출 2,0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새정부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을 제시함

(산업부 보도자료, 2023. 1. 16.)

* 중소기업과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닌 기업(기업수 5,480개사, 수출 1,138억불, '21 기준)

- ① 이를 위해 「15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①글로벌 진출, ②공급망 안정, ③디지털전환에 향후 10년간 R&D 약 1.5조원(총사업비 기준)을 투입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해 중견기업이 신사업·신기술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2

I. 서론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3년 1월 16일 **새정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발표함

2)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은 글로벌 수요 위축, 고금리 등으로 수출과 투자 쌍둥이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의 허리이자 높은 성장성을 지닌 혁신 기업군으로서 중견기업 육성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됨

* 글로벌금융위기(09)時 대기업보다 2배 빠른 회복, 日수출규제(20)時 對日 의존도완화에기여

① 특히 지난 10여년이 중견기업을 위한 법, 지원 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중견기업이 본격적으로 양적·질적 성장할 수 있도록 R&D, 수출, 신사업 투자 확대 등 전 방위적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기업수 1만개, 수출 2,000억불을 달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 비전을 담음

① (투자·재원확보)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단계에서는 중견기업이 사모펀드(PEF),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민간 성장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기술혁신펀드 출자를 통해 1천억원 규모의 1호 펀드(子펀드)가 출시될 예정임**

3

I. 서론

3 **재원마련 「中堅 도약지원 펀드」 조성을 통한 신사업 투자재원 확보 지원**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 조성(정책펀드 8천억원 + 민간주도 펀드 2천억원)

정책펀드 ① 중견 → 글로벌 기업 도약 지원(산업부), ② 중소 → 중견기업 도약 지원(중기부)

민간펀드 ③ 중견 ↔ 중소·벤처 M&A·전략적 제휴(중견기업 주도, 「중견 연합형 CVC 벤처모펀드」 조성)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조성 계획안('23~'27년)

	방안	조성규모(억원)	주투자대상
정책펀드	중견기업 혁신지원(산업부)	3,000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
	스케일업 중견 도약(중기부)	5,000	후보 중견기업 및 혁신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민간펀드	중견 연합형 CVC 벤처모펀드	2,000	중견-벤처 간 협력모델
총합		1조원	

* 금년 중 1천억원 규모 중견기업 혁신지원 펀드(산업부) 1차 결성('23.1.) → 후속 펀드 지속 조성('27)

자료 : 산업부 보도자료 별첨, 2023. 1. 16.

4

I. 서론

2. 산업부는 2023년 3월 9일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협약식을 개최함

- 1)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23.1월)을 통해 ‘27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문 투자펀드 조성계획 발표 첫 번째 조치로 1,000억원규모*의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 추진
(산업부 보도자료, 2023. 3. 9.)

*정책자금(산업기술혁신펀드) 400억 원 + 중견기업 100억 원** + 민간매칭 500억 원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Young CEO)들을 중심으로 출자금 100억 원 조성(4개 기업(와이지-원, SD바이오센서, SIMPAC, 한국카본)이 25억 원씩 총 100억 원 출자)

- ①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최초의 민·관 협력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생태계 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 지원

5

I. 서론

2. 산업부는 2023년 3월 9일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협약식을 개최함

- 2)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기술경쟁력 강화, 신사업 진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1조 원 규모 중견기업 특화 펀드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음

* 기술이전, 공동 연구개발(R&D), 기술 사업화, 인수합병(M&A) 등 기업 간의 기술협력 활동

【 중견기업 특화 펀드(中堅 도약지원 펀드) 조성 계획안(‘23~’27년) 】

방안		조성규모(억 원)	주투자대상
① 정책펀드	중견기업 혁신펀드(산업부)	3,000 (‘23년, 1,000억 원)	중견기업의 개방형혁신 (기술사업화, R&D, M&A 등)
	스케일업·중견 도약(중기부)	5,000 (‘23년, 1,150억 원)	후보 중견기업 및 혁신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
② 민간펀드	중견 연합형 벤처모펀드	2,000 (‘24년 출시목표)	중견-벤처 간 협력모델
총합		10,000	

6

I. 서론

2. 산업부는 2023년 3월 9일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협약식을 개최함

- 3) (정책펀드) 대출 등 간접금융 중심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신규 투자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8천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함

* 中堅외부자금조달원(22년 실태조사): (시중은행) 68.8% (정책자금) 6.4% (회사채) 5.8% 등

** 신사업 추진시 필요정책('22년 실태조사): (자금지원) 43.6% (규제완화) 18.0% 등

- ①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11월부터 1차 펀드의 투자가 시작되고, 올해 안에 1천억 원 내외의 2차 펀드 조성도 착수하는 등 2025년까지 3천억 원 규모로 확대·조성할 계획임
- ② 또한, 성장잠재력 높은 후보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5천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중견 도약펀드」 조성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함

7

I. 서론

2. 산업부는 2023년 3월 9일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협약식을 개최함

- 4) (민간펀드) 중견기업 출자금 등 100%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2024년까지 2천억 원 규모의 민간주도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 ① 중견기업들의 공동 출자를 통해 「중견(中堅) 연합형 벤처모펀드」를 조성하여, 독자적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이 어려운 중견기업들의 혁신 벤처와의 협업기회도 확대할 계획임

8

Ⅱ. 중견기업 혁신펀드(산업부)

1. 선정 개요

항 목	세부내용						
위탁운용 금 액 및 선 정 운용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00억원 이내 <table border="1"> <thead> <tr> <th>선정 운용사 수</th> <th>총 출자금액^{주1,2)}</th> <th>최소결성금액^{주2)}</th> </tr> </thead> <tbody> <tr> <td>1개</td> <td>500억원 이내</td> <td>1,000억원 이내</td> </tr> </tbody> </table> <p>주1) 기술혁신전문펀드 400억원, 지정출자자(중견기업 4개사) 100억원 주2) 결성 시한 내 지정출자자 출자금액 변동, 출자자 모집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협의를 통해 최종 결성액 조정가능</p>	선정 운용사 수	총 출자금액 ^{주1,2)}	최소결성금액 ^{주2)}	1개	500억원 이내	1,000억원 이내
선정 운용사 수	총 출자금액 ^{주1,2)}	최소결성금액 ^{주2)}					
1개	500억원 이내	1,000억원 이내					
출자대상 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 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포함 <p>※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p>						
운 용 사 신 청 자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 ○ 공동 운용(CO-GP) 시에는 제안펀드 운용상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자료 : 한국성장금융 보도자료, 2023. 3. 9.

9

Ⅱ. 중견기업 혁신펀드(산업부)

2.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비율

- 투자대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하되,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중견기업은 투자대상에 포함 가능

□ 주목적 투자대상

세부내용
○ 아래 ①, ②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주1)}
① 아래 두 가지 분류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 이 중 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주2)}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제조업 등) - 타 기업 및 타 기관(대학 소속 연구기관 등)과(의) 오픈이노베이션^{주2)}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제조업 등)
② 우수 기술기업 ^{주3)} 에 투자집행금액의 80% 이상 투자 <p>주1) 단일 투자건의 주목적 투자대상 중복적용 가능 주2) 기술 이전, 공동 R&D, 기술 사업화 등 기업 간의 기술 협력 활동(기술 구매, 기술 판매, 공동 연구, 연구 위탁 계약, 합작 벤처 설립 및 투자, 기업 인수 등) 주3)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5등급(T15) 이상이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발명진흥법」에 따른 기술기초평가를 받은 기업</p>

10

II. 중견기업 혁신펀드(산업부)

3. 주요 출자조건

항 목	세부내용
운 용 사 출자비율	○ 약정총액의 1% 이상* *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운용사(이하 "LLC형 VC")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
최 소 결성금액 ^{하)}	○ 최소 1,000억원 이상 주) 결성 시한 내 지정출자자 출자금액 변동, 출자자 모집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협의를 통해 최종 결성액 조정가능

11

II. 중견기업 혁신펀드(산업부)

항 목	세부내용											
존속기간	○ 펀드 결성일(성립일)로부터 8년 이내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성립일)로부터 4년 이내											
납입방식	○ 수시납(Capital call) 또는 분할납											
운용보수	○ 관리보수 :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 분*</th> <th>≤500억원</th> <th>≤1,000억원</th> <th>≤1,500억원</th> <th>2,000억원<</th> </tr> </thead> <tbody> <tr> <td>결성일~2년 (약정총액 기준)</td> <td rowspan="2">2.5% 이내</td> <td rowspan="2">2.0% 이내</td> <td rowspan="2">1.5% 이내</td> <td rowspan="2">1.0% 이내</td> </tr> <tr> <td>2년~만기 (투자잔액 기준)</td> </tr> </tbody> </table> * 결성일~2년: 약정총액 기준 / 2년 이후~존속기한: 투자잔액 기준 **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시 상기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7% 초과수익의 20% 이내 ※ 펀드별 보수 체계는 선정 시 상기 범위 내에서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구 분*	≤500억원	≤1,000억원	≤1,500억원	2,000억원<	결성일~2년 (약정총액 기준)	2.5% 이내	2.0% 이내	1.5% 이내	1.0% 이내	2년~만기 (투자잔액 기준)
구 분*	≤500억원	≤1,000억원	≤1,500억원	2,000억원<								
결성일~2년 (약정총액 기준)	2.5% 이내	2.0% 이내	1.5% 이내	1.0% 이내								
2년~만기 (투자잔액 기준)												

12

Ⅲ. 스케일업 중견도약(중기부)

1.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 총 4,805억원 내외
투자조건 및 투자방법	· 증권시장(코넥스 시장 제외)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등 세부내용은 3. 출자 분야 및 투자대상 참조 · 조합 성격 및 공고문 주목적 투자대상 등에 따라 투자조건 및 투자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분야 주목적 투자대상을 준용
출자 대상	·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료 : 한국벤처투자 출자사업공지, 2023. 3. 8.

13

Ⅲ. 스케일업 중견도약(중기부)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 억원)

분 야	출자예산 (변동가능)	결성 목표액	최대 출자비율	선정 조합수	자조합별 출자액	신청가능 조합형태	
지역혁신벤처펀드(모펀드) ^{주1}	357	357	-	-	-	· 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글로벌펀드(모펀드) ^{주1}	648	648	-	-	-		
지역엔젤투자재간접펀드(모펀드) ^{주1}	200	200	-	-	-		
창업초기	일반	500	833	60%	4		125
	투키 ^{주2}	400	667	60%	4		100
초격차 (민간계안)	일반	600	1,200	50%	4		150
	투키 ^{주2}	400	800	50%	4		100
스케일업· 중견도약	중소형	200	400	50%	1		200
	대형	300	750	40%	1		300
일반벤처	중소형	300	1,000	30%	3		100
	대형	400	2,000	20%	2		200
LP지분유동화	200	400	50%	1	200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주3}	300	1,500	20%	-	-		
합 계	4,805	10,755	-	-	-		

14

Ⅲ. 스케일업 중견도약(중기부)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창업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창업기업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상기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초격차 (민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① 또는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① 10대 초격차 분야 중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제시하는 분야의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② 정부가 선정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정책(프로젝트)」 선정 기업 * 10대 초격차 분야 : ①시스템반도체, ②바이오·헬스, ③미래 모빌리티, ④친환경·에너지, ⑤로봇, ⑥빅데이터·AI, ⑦사이버보안·네트워크, ⑧우주항공·해양, ⑨차세대 워전, ⑩양자기술 세부 반영범위는 규약현의 시 결정 	
스케일업 중견도약	중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중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 상기 주목적 대상에 대해 후속투자를 포함하여 펀드 해산시까지 기업당 평균 30억원 이상 투자
	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중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 상기 주목적 대상에 대해 후속투자를 포함하여 펀드 해산시까지 기업당 평균 40억원 이상 투자

15

Ⅲ. 스케일업 중견도약(중기부)

4. 주요 출자조건

항목	내용						
입주입점조약인 의무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 Co-GP의 경우 합산하여 산정 						
자조합의 투자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 약정총액에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다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신청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 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신청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 						
출자금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투자(납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 이내로 운용사 자율제한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이상 운용사 자율제한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관리보수 지급기준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 (조합 약정총액×1%)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총액(출자액정액)이 50억원 이하의 경우, 3.0%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액정액)이 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액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액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 </div>						
기준수익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기준수익률</th> <th>분야</th> </tr> </thead> <tbody> <tr> <td>7% 이상</td> <td>일반 세컨더리</td> </tr> <tr> <td>5% 이상</td> <td>창업초기, 초격차, 스케일업 중견도약, LP지분유통화</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하며, 세부 적용방법은 규약현의 시 결정 	기준수익률	분야	7% 이상	일반 세컨더리	5% 이상	창업초기, 초격차, 스케일업 중견도약, LP지분유통화
기준수익률	분야						
7% 이상	일반 세컨더리						
5% 이상	창업초기, 초격차, 스케일업 중견도약, LP지분유통화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16

IV. 민간펀드

1. (중기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 1) (개념)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

(중기부 보도자료, 2022. 11. 4.)

- ① 운용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 중심의 자펀드 출자 방식으로 손실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 민간 자본 유입 유인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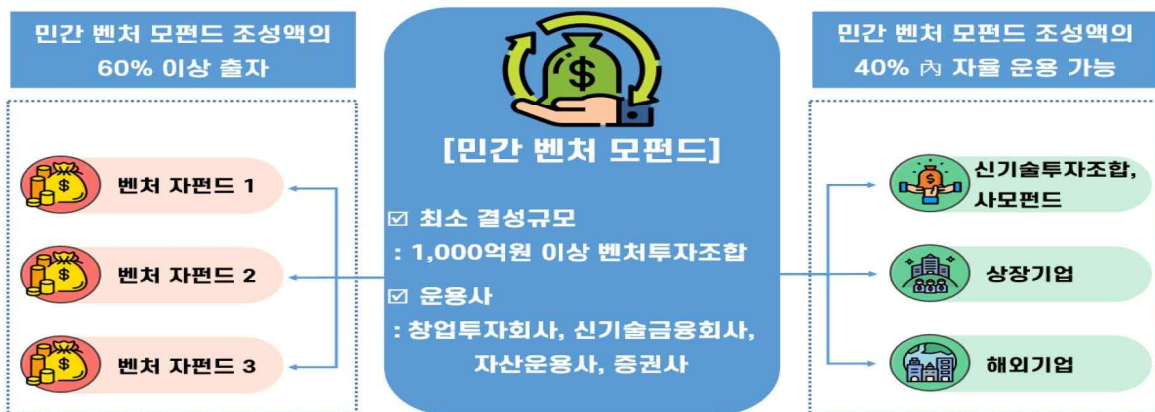
※ 해외 민간 벤처모펀드 7개국 22개 : 미국 12개, 중국 5개, 캐나다·영국·독일·사우디·브라질 각 1개 / 한국 없음 [‘21.11월 Preqin(Private Equity Intelligence) 조사]

17

IV. 민간펀드

1. (중기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민간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구조(안)>



자료 : 중기부 보도자료, 2022. 11. 4.

18

IV. 민간펀드

1. (중기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 2) (조성 활성화) 모펀드 출자·운용·회수 단계별 세제 인센티브 마련, 모펀드 출자자 지분 유동화 지원(모펀드 전용 LP지분유동화펀드 조성)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 ① (출자단계) 법인 출자 세액공제(직접 출자당기분 5%+추가분 3% 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간접 출자출연금의 10%) 및 개인 출자(출자액의 10%) 소득공제 검토
- ② (운용단계)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 공동 운용사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하여 면제
- ③ (회수단계)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검토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에 한정

19

IV. 민간펀드

1. (중기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677, 2023. 1. 30,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13. “공공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70조에 따라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

20

IV. 민간펀드

1. (중기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677, 2023. 1. 30,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한 특례) ①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1

IV. 민간펀드

1. (중기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677, 2023. 1. 30,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③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용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벤처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 제목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을 "(공공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투자모태조합"을 "공공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한다.

22

IV. 민간펀드

1. (중기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4)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기재부 보도자료, 2022. 11. 4.)

① 내국법인이 펀드 등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

출자대상	현행	개선
일반 벤처펀드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현행과 동일
민간 모펀드	-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¹⁾ 의 5% + 증가분의 3% ²⁾

1) 모펀드의 경우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과 '모펀드 출자금액의 60%' 중 큰 금액
2) (당해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 3%

②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모펀드 투자 시 세액공제

출연목적	현행	개선
상생협력 목적 기금 출연	출연금액의 10%	현행과 동일
모펀드 투자 목적 기금 출연	-	출연금액의 10%

23

IV. 민간펀드

1. (중기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4)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기재부 보도자료, 2022. 11. 4.)

③ 개인이 펀드 출자시 소득공제

출자대상	현행	개선
일반 벤처펀드	출자금액의 10%	현행과 동일
민간 모펀드	-	출자금액의 10%

④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펀드 용역 공급자		현행	개선
정부 모펀드	공급자 : 한국벤처투자	○	현행과 동일
일반 벤처펀드	공급자 : 단독 운영사		
민간 모펀드	공급자 : 단독 운영사	-	○*
	공급자 : 공동 운영사		

* 다만, 공동운영사의 경우 출자 부분에 한하여 면세

24

IV. 민간펀드

1. (중기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4)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기재부 보도자료, 2022. 11. 4.)

㉔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출자대상	출자자·출자법인	현행	개선
벤처펀드	개인 및 창업투자회사 등	○	현행과 동일
	자산운용사·증권회사	X	
민간 모펀드	개인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자산운용사·증권회사	-	○*

*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업자와 공동운용사로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증권회사

㉕ 적격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적격펀드	현행	개선
사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	현행과 동일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X	○

25

IV. 민간펀드

2. (산업은행) 혁신성장펀드 재정 모펀드

1) 선정 개요

항목	세부내용
목적	○ '23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재정 모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선정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23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23222, 금융위원회)
위탁운용 금액	① 혁신산업 모펀드 : 2,000억원 (민간A) ② 성장지원 모펀드 : 1,000억원 (민간B)
선정 운용사 수	○ 총 2개사 (① 혁신산업 모펀드 1개사, ② 성장지원 모펀드 1개사) * 제안사는 각 모펀드별 지방 순위를 제안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및 운용사가 제시한 지방 순위를 고려하여 각 재정 모펀드별 위탁 운용사 선정
지원자격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249조의 3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고, 운용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법인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 집계(펀드/회사별설정규모/AUM(펀드+투자일임)/순자산 총액+평가액/지역 전체/기금 전체)의 '22년말 기준

자료 : 산업은행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 공고문, 2023. 2. 24.

26

IV. 민간펀드

1. (산업은행) 혁신성장펀드 재정 모펀드

1) 선정 개요

항 목	세부내용																																													
분야별 출자계획	○ '23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에 따른 분야별 출자계획에 따라 민간A 운용사는 혁신산업 모펀드 운용, 민간B 운용사는 성장지원 모펀드 운용 - (정책출자 규모) 재정 모펀드 3,000억원, 당행 6,000억원* 총 9,000억원 * 재정 모펀드와 별도로 당행이 자펀드에 직접 출자 예정																																													
	'23년 혁신성장펀드 출자분야별 상세 출자계획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모펀드 운용</th> <th colspan="3">출자재원</th> <th rowspan="2">조성규모</th> </tr> <tr> <th>재정</th> <th>당행</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혁신 산업 펀드</td> <td rowspan="2">혁신산업 일반 매칭</td> <td rowspan="2">민간A</td> <td>1,536</td> <td>3,000</td> <td>4,536 (36.0%)</td> <td rowspan="2">12,600</td> </tr> <tr> <td>464</td> <td>-</td> <td>464 (19.3%)</td> </tr> <tr> <td>소계</td> <td>2,000</td> <td>3,000</td> <td>5,000</td> <td>15,000</td> </tr> <tr> <td rowspan="3">성장 지원 펀드</td> <td rowspan="2">성장지원 일반 매칭</td> <td rowspan="2">민간B</td> <td>300</td> <td>2,900</td> <td>3,200 (32.0%)</td> <td rowspan="2">10,000</td> </tr> <tr> <td>700</td> <td>100</td> <td>800 (16.0%)</td> </tr> <tr> <td>소계</td> <td>1,000</td> <td>3,000</td> <td>4,000</td> <td>15,000</td> </tr> <tr> <td colspan="2">합계</td> <td>3,000</td> <td>6,000</td> <td>9,000</td> <td>30,000</td> </tr> </tbody> </table>	구분	모펀드 운용	출자재원			조성규모	재정	당행	계	혁신 산업 펀드	혁신산업 일반 매칭	민간A	1,536	3,000	4,536 (36.0%)	12,600	464	-	464 (19.3%)	소계	2,000	3,000	5,000	15,000	성장 지원 펀드	성장지원 일반 매칭	민간B	300	2,900	3,200 (32.0%)	10,000	700	100	800 (16.0%)	소계	1,000	3,000	4,000	15,000	합계		3,000	6,000	9,000	30,000
	구분			모펀드 운용	출자재원			조성규모																																						
		재정	당행		계																																									
	혁신 산업 펀드	혁신산업 일반 매칭	민간A	1,536	3,000	4,536 (36.0%)	12,600																																							
				464	-	464 (19.3%)																																								
		소계	2,000	3,000	5,000	15,000																																								
	성장 지원 펀드	성장지원 일반 매칭	민간B	300	2,900	3,200 (32.0%)	10,000																																							
				700	100	800 (16.0%)																																								
소계		1,000	3,000	4,000	15,000																																									
합계		3,000	6,000	9,000	30,000																																									

27

IV. 민간펀드

1. (산업은행) 혁신성장펀드 재정 모펀드

1) 선정 개요

자펀드 조성계획 (모펀드 주목적 투자분야)	○ '23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에 따른 기업투자 펀드 조성·출자 - (혁신산업 모펀드) 혁신성장공동기금 분야 및 新성장 4.0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VC, PE 펀드에 출자 - (성장지원 모펀드) 후기 스케일업 단계 중소·중견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VC, PE 펀드에 출자 ※ 제안사는 혁신산업 모펀드 및 성장지원 모펀드 모두 제안하여야 함																																																
	자펀드 조성계획 및 정책출자 비율 (단위: 억원, 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펀드 규모</th> <th>주관</th> <th>운용사 수</th> <th>조성 규모</th> <th>정책 출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혁신 산업 펀드</td> <td rowspan="2">혁신산업 일반</td> <td>당행</td> <td>3</td> <td>6,600</td> <td>36.0%</td> </tr> <tr> <td>민간A</td> <td>5</td> <td>6,000</td> <td>36.0%</td> </tr> <tr> <td>매칭</td> <td>민간A</td> <td>2</td> <td>2,400</td> <td>19.3%</td> </tr> <tr> <td colspan="2">소계</td> <td></td> <td>10</td> <td>15,000</td> <td>33.3%</td> </tr> <tr> <td rowspan="3">성장 지원 펀드</td> <td rowspan="2">성장지원 일반</td> <td>당행</td> <td>2</td> <td>10,000</td> <td>32.0%</td> </tr> <tr> <td>민간B</td> <td>2</td> <td>5,000</td> <td>16.0%</td> </tr> <tr> <td>소계</td> <td></td> <td>4</td> <td>15,000</td> <td>26.7%</td> </tr> <tr> <td colspan="2">합계</td> <td></td> <td>14</td> <td>30,000</td> <td>30.0%</td> </tr> </tbody> </table>	구분	펀드 규모	주관	운용사 수	조성 규모	정책 출자비율	혁신 산업 펀드	혁신산업 일반	당행	3	6,600	36.0%	민간A	5	6,000	36.0%	매칭	민간A	2	2,400	19.3%	소계			10	15,000	33.3%	성장 지원 펀드	성장지원 일반	당행	2	10,000	32.0%	민간B	2	5,000	16.0%	소계		4	15,000	26.7%	합계			14	30,000	30.0%
	구분	펀드 규모	주관	운용사 수	조성 규모	정책 출자비율																																											
	혁신 산업 펀드	혁신산업 일반	당행	3	6,600	36.0%																																											
			민간A	5	6,000	36.0%																																											
		매칭	민간A	2	2,400	19.3%																																											
	소계			10	15,000	33.3%																																											
	성장 지원 펀드	성장지원 일반	당행	2	10,000	32.0%																																											
			민간B	2	5,000	16.0%																																											
소계			4	15,000	26.7%																																												
합계			14	30,000	30.0%																																												

28

IV. 민간펀드

1. (산업은행) 혁신성장펀드 재정 모펀드

1) 선정 개요

항 목	세부내용
자펀드 주목적 투자분야	<p>○ '23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에 따른 자펀드 주목적 투자분야</p> <p>【혁신산업펀드】</p> <p>- (혁신산업 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혁신성장공통기준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 투자 ■ 新성장 40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또는 '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기본방향에 따른 '글로벌 초격차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분야에 정책출자금액 이상 투자 * (新기술) 미래모빌리티, 독자적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핵심기술, 에너지신기술 (新원상) 내살속의디지털, 차세대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농어업, 스마트그리드 (新시장) 전략산업 No1 달성, 바이오혁신, K-컬처융합관광, 한국의디즈니육성, 빅데이터주요플랫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원전 *** 바이오필름, 나노소재, 수소생태계, ICT신산업, 미디어컨텐츠, 해양신산업, 국토교통신산업 ■ 중소·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 투자 <p>- (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출자금액의 2배 이상을 2023 혁신성장공통기준 품목 해당 중소·중견기업에 투자 <p>【성장지원펀드】</p> <p>- (성장지원 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 중소·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 투자 ■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e) 50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 투자 <p>- (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출자금액의 2배 이상을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e)가 50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 투자 <p>※ 조성계획 등은 관련법규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행과 협의를 거쳐 모펀드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p>
	29

IV. 민간펀드

1. (산업은행) 혁신성장펀드 재정 모펀드

2) 선정 지원 현황

<혁신성장펀드 2023년 재정 모펀드 위탁운용사 지원 현황>
지원운용사 (가나다순)
신한자산운용
아이비케이자산운용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화자산운용

자료 : 산업은행 보도자료, 2023. 3. 16.

V. 활성화 방안

1. “기술사업화 중견기업” 규정 신설

1) 중견기업법 제2조 (정의)

4. “기술사업화 중견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법 제2조의2 (기술사업화 중견기업의 요건)

① 기술사업화 중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중견기업

나. 「발명진흥법」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중견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기술등급을 받은 중견기업

❖ “기술사업화 중견기업” 정의 도입 근거 규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법)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31

V. 활성화 방안

1. “기술사업화 중견기업” 규정 신설

3) 중견기업법 제2조3 (기술사업화 중견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기술사업화 중견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술사업화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사업화 중견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술사업화 중견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00조에 따른 기술사업화 중견기업확인위원회(이하 “기술사업화 중견기업확인”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사업화 중견기업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기술사업화 중견기업확인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업화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업화 중견기업확인기관의 장은 기술사업화 중견기업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기술사업화 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기술사업화 중견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사업화 중견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2

V. 활성화 방안

2. “기술사업화 중견기업”에 투자시 세제혜택 부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술사업화 중견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3

V. 활성화 방안

2. “기술사업화 중견기업”에 투자시 세제혜택 부여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8., 2022. 12. 31.>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기술사업화 중견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기술사업화 중견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4

V. 활성화 방안

3. 벤처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등이 “기술사업화 중견기업”에 주목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1) 벤처투자법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른 기술사업화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5.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6.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7.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5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II

중견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 :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중견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견기업법)¹⁾에서는 중견기업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i)「중소기업기본법」 제2조²⁾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i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³⁾에 따른 공공기관, (iii)「지방공기업

- 1)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⁴⁾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iii)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⁵⁾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견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8.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견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8.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18. 3. 27., 2021. 2. 17., 2021. 12. 28.>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 가. 금융업
- 나. 보험 및 연금업
-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2021. 9.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8. 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 하지만, 중견기업기술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중견기업법 제17조의2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에 의거할 때, 대기업과의 기술분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 내지 제28조의 분쟁조정 및 중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기술분쟁과 관련해서는 중견기업기술은 중소기업기술의 정의를 적용할 것이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중소기업기술보호법)⁶⁾은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호과)의 소관법률이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다(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여기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i)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ii) (i)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iii) (i)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3호).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절차에 대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제23조 내지 제28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대 대기업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만 중소기업기술 보호법상 분쟁의 조정 내지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소관부처가 중소기업청인 경우에는 산업통산자원부와 의 예산 조율 등의 관계로 중견기업의 범위를 일정 한도로 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분리되고 별도의 예산이 책정된 현재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조정신청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중견기업 대 중견기업의 분쟁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사조정법 제30조를 적극적

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 6)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19호, 2022. 10. 18., 일부개정].

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일반론을 소개하고, 현재 기술보호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이 살펴보고 우리 법제상 시사하는 바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견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의의

1.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유형

가. 화해

화해는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로 나눌 수 있다. 재판외 화해는 민법상 화해(민법 제 731조 이하)로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반면 재판상 화해(민사소송법 제220조)는 민사상 다툼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하는 제소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와 일단 소송이 개시되어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진술하여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소송상 화해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도 화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면화해제도(민사소송법 제148조 제3항), 화해권고결정제도(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 및 형사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⁷⁾ 등이 있다.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조서에 기재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21조), 형사피고사건에 있어 합의가 공판조서에 기재되는 경우(소송촉진법 제36조 제5항) 등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나. 알선

알선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한 알선위원이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입장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절차다. 일방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알선은 양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예컨대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⁹⁾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저작권법 제113조의2)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조정

7)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8)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년, 13-14면.

9)

http://www.kcab.or.kr/jsp/kcab_kor/mediation/medi_01.jsp?sNum=0&dNum=0&pageNum=3&subNum=1&mi_code=medi_01 (최종방문일: 2023. 3. 20.).

(1) 알선형 조정(mediation)

알선형 조정(mediation)은 중립적 매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조정인이 당사자들의 개별적 이해관계를 당사자들의 분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비공식적 합의절차를 의미한다. 예컨대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알선은 대한상사중재원 직원이 수행하므로 이는 조정인이 조정하는 알선형 조정과는 구별된다. 이 조정은 계약의 효력을 갖는다. 조정인은 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조정인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¹⁰⁾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조정인은 당사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¹¹⁾

(2) 통상적인 조정(Conciliation)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인 조정에 있어 조정인은 당사자가 서로 주장하도록 하며 알선형 조정 보다는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조정인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보다 큰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조정의 결과가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정의 다수는 통상적인 조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검토

국내에서 조정을 'mediation'으로 영역(英譯)하는 기관이 종종 있는데, 그 조정의 실질은 'conciliation'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몇 사례에서는 'mediation'과 'conciliation'이란 용어를 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¹²⁾ 조정(conciliation)은 법원조정과 행정조정으로 나뉘며 법원조정은 민사조정과 가사조정으로 나뉜다.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에 따라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분류하면, 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행정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및 사적 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에 의하여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 관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로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영업비밀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사적 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예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조정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물론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해 당사자 일방의 조정합의 권유가 가능하나 이로 인하여 조정기한이 최소 15일 지연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조정절차에의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과 조정불성립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10) <http://www.wisegeek.com/what-is-the-difference-between-conciliation-and-mediation.htm> (최종방문일: 2023. 3. 20.).

11) <http://www.wisegeek.com/what-is-the-difference-between-conciliation-and-mediation.htm> (최종방문일: 2023. 3. 20.).

12) Gyooho Lee, *South Korea*, in Carlos Esplugues Mota and Silvia Barona Vila eds, *Global Perspectives on ADR 287-339* (Intersentia, 2013).

조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³⁾

조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 조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에 서명한 46개국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조정 협약은 국제적 상사분쟁에 대한 조정 합의를 체결국에서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grational Trade Law)의 협약이다. 협약 제3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화해합의로 이미 해결된 경우”에 체결국의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화해합의를 제출하여 그 사안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협약은 화해합의에 기판력을 부여하고 있다.¹⁴⁾ 이러한 효력은 화해합의에 따라 이미 성공적으로 해결되어 합의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분쟁의 측면에 국한되고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 있거나 화해합의에 기재되지 않았던 분쟁의 측면은 포섭하지 아니한다.¹⁵⁾ 화해합의에 기판력을 부여한 논거는 두 번째 절차가 제기된 국가에서 분쟁의 대상인 쟁점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¹⁶⁾ 이는 반복금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해합의에 계약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 당사자가 다른 분쟁해결수단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¹⁷⁾

라. 중재

중재란 당사자 간 합의로 사법상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중재법 제3조 제1호). 중재는 중재인이 하는 사적 재판으로서 단심제이며 비공개로 심리된다. 상사중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인 대한상사중재원이 행하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중재법 제41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부가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내린 중재판정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기업 A는 중국기업 B(대표: 한국인 甲)에게 원코팅용 습식수지 완제품을 판매하고 중국기업 B는 중국기업 C에게 동 제품을 판매하였다. 중국기업 C의 제품가공생산과정에서 박리강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한국기업 A는 해당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이후 중국기업 B는 한국기업 A의 종업원 D를 채용하고 D는 원료배합

13) 이규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ADR의 활성화방안”, 대한상사중재원-WIPO 공동주최 지식재산(IP) 분쟁 세미나, 2015년 5월 29일(장소: 서울국제중재센터) 발표자료 (이하 “이규호, 중소기업 ADR”이라 한다.).

14) https://diposit.ub.edu/dspace/bitstream/2445/145141/1/tfm_felipe_pavan_callejas.pdf (최종방문일: 2023년 3월 2일); Guillermo Palao, *Article 3 General Principles*, in Guillermo Palao ed.,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 3.63, p. 126 (December 7, 2022).

15) Id. at § 3.62, p. 125-126.

16) Id. at § 3.63, p. 126.

17) Id.

비율에 관한 작업지시서 작성 등 영업노하우를 중국기업 B에게 제공하였다. D가 한국 기업 A에서 퇴직한 이후 중국기업 B는 한국기업 A로부터 물품구매를 중단하였다. 한편 중국기업 B와 D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안에서 한국기업 A는 중국기업 B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부는 이 건 습식수지제조상 원료배합비율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어서 중국기업 B의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5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¹⁸⁾

이러한 영업비밀 관련 중재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우에 따라서는 2심 중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예컨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하 'WIPO'라 한다) 조정·중재센터처럼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그 분쟁가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단심제보다는 2심 중재에 의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허용하는 기관이 있다. 그 실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기계의 유럽특허 및 미국특허의 침해¹⁹⁾에 관한 여러 국가에서의 소송에 이어 유럽 회사와 미국 회사는 WIPO 중재조항을 포함한 화해계약에 서명하였다.

당사자간 분쟁에 있어 특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양당사자는 WIPO 표준 중재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이 수정 WIPO 중재조항에 따르면, 미국특허에 대한 침해청구는 미국 중재인 1인이 심리하여야 하고 유럽특허에 관한 침해청구는 유럽 중재인 1인이 심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이 수정 WIPO 중재조항은 유럽 중재인과 미국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에 대해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된 2심 중재판정부가 재심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화해계약에 서명한지 1년이 지난 뒤, 유럽 회사는 자사의 미국특허 및 유럽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WIPO 중재를 신청하였다. WIPO 조정·중재센터가 제시한 중재인후보자 명단을 받아보고 양당사자는 미국특허와 유럽특허의 침해주장을 각각 다루기 위해 특허법전문가로서 미국인 1인과 유럽인 1인을 각각 선임하는데 합의하였다. 미국인 중재인과 유럽인 중재인은 선임후 18개월 내에 각각 중재판정을 내렸다. 양당사자는 이 중재판정에 대해 2심 중재절차를 활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²⁰⁾

둘째, 1차적으로 조정절차에 의하고, 조정 불성립시 2차적으로 중재절차에 의하도록 함으

18) 김지호, “KCAB의 IP분쟁해결현황과 중재판정사례”, 대한상사중재원-WIPO 공동주최 지식재산(IP) 분쟁 세미나, 2015년 5월 29일(장소: 서울국제중재센터) 발표자료.

19)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case-example.html> (최종방문일: 2023. 3. 20.).

20)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case-example.html> (최종방문일: 2023. 3. 20.).

로써 최소한 2심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고 조정절차와 중재절차에 전문가 결정 절차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성과 전문성을 배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²¹⁾

셋째, 중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중재와 관련해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긴급 중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방적 잠정가처분(temporary restraining order)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및 국내중재규칙에는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WIPO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영업비밀, 노하우 및 민감정보를 상대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²²⁾ 마찬가지로 ICC 중재규칙 제20조 제7항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영업비밀 및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³⁾ 따라서 국제법규상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이란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 뿐만 아니라 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도 포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쟁이 소송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WIPO 표준중재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 있는바, 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중재(중재신청, 송달, 중재절차의 기록 관리, 납부 등)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전환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²⁴⁾

마.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

전문가결정절차는 분쟁당사자가 전문가 결정 규칙에 의거하여 합의하에 특정 사안(예, 기술적 문제)을 단독 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제출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 전문가가 그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전문가 결정은 당사자들이 그 결정에 대해 다른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발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²⁵⁾는 전문가결정규칙을 두고 있지 않으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조정규칙, 중재규칙 이외에 전문가결정규칙(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을 두고 있다.²⁶⁾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전

21) 이규호, 중소기업 ADR.

22) Article 52 of WIPO Arbitration Rules.

23) Article 20(7) of ICC Rules of Arbitration; Trevor Cook & Alejandro I. Garci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262 (2010).

24) 이규호, 중소기업 ADR; 참고로 중국 광조우 중재위원회는 온라인중재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http://odr.gzac.org/arbSite/main.action>). 특히 중국 광조우 중재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온라인 중재규칙과 더불어 신용카드분쟁, 소규모 온라인쇼핑 분쟁 및 온라인 대출분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 광조우 중재위원회 소개자료, 2018년, 18-19).

25)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 내지 제28조.

26) 대한상사중재원은 별도의 전문가결정규칙을 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는 전문가결정규칙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조문들을 두고 있다. 즉, 2016년 6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전문가

문가결정규칙은 조정이나 중재가 개시되기 이전에 또는 조정이나 중재가 계속중인 경우에 기술적 문제에 대한 쟁점 정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이나 중재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결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거하여 전문가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및 당사자가 전문가 결정에 구속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감정이나 소송대리인이 많이 활용하는 사감정과는 상이하다. 국내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전문가결정 규칙을 둔 기관은 전무한 상태다. 예컨대 특허와 영업비밀에 관한 쟁점이 혼재된 사안에서 특허무효심판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진보성 쟁점을 전문가 결정에 의할 수 있다면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므로 이 절차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²⁷⁾

일반 계약상의 분쟁과 달리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중재합의가 있을 수는 없고 결국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양 당사자 모두 대체적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실무상으로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이러한 사후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중재의 경우, 그 절차 전체의 비밀성, 단심제에 의한 중재판정의 불확실성, 선임된 중재인의 공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 중재비용 확정의 곤란 등은 중재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²⁸⁾

III. 기술보호를 위한 ADR 현황

1.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및 중재 현황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 중재 현황

- ①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수인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중재판정부가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특정 쟁점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위임할 사항은 중재판정부가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그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류, 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게 하도록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 ③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의 보고서 수령 후 그 사본을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당사자들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가가 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27) 이규호, "중소기업 ADR"에 관한 발표자료에서는 “현재 등록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사건(손해배상청구의 소, 침해금지청구의 소 등)에 대해서 중재가 허용된다”고 지적하면서 “특허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그런 다음, 위 발표자료에서는 “후자를 중재절차에 우회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에 포섭할 수 있도록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전문가 결정규칙(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2014년 6월 1일 시행)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위 발표자료에서는 등록지식재산권과 비등록지식재산(권)이 혼재된 사건의 경우(예: 특허등록 무효와 영업비밀침해가 혼재된 경우)에 등록특허권에 관한 쟁점의 판단은 전문가 결정에 맡기고 영업비밀침해는 중재규칙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전문가결정규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8) 2015년 5월 29일(장소: 서울국제중재센터) 대한상사중재원-WIPO 공동주최 지식재산(IP) 분쟁 세미나의 패널토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다.

조정·중재위원회 설치('15.1.22) 이후 총 183건의 조정이 접수되어, 175건이 종료(성립 40건, 불성립 45건, 기타 90건)되고 2023년 2월 28일 현재 8건이 진행 중

< 조정 접수·처리 현황 >

구분	접수	진행중	종료					
			조정안 제시			조정안 제시 불가		
			성립	불성립	계	신청인 취하	조정중단 *	계
15년	22	-	3	4	7	1	14	15
16년	17	-	6	8	14	2	1	3
17년	19	-	2	7	9	3	7	10
18년	19	-	3	9	12	-	7	7
19년	21	-	2	7	9	1	11	12
20년	30	-	6	5	11	-	19	19
21년	25	-	10	5	15	-	10	10
22년	24	3	8	-	8	1	12	13
23년	6	5	-	-	-	1	-	1
계	183	3	40	45	85	8	81	89
비율(%)	-	-	47.1%	52.9%	100.0%	10.0%	90.0%	100.0%

* 조정중단 : 사실확인 어려움, 피신청인 조정의사 없음 등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결한 사건
출처: 2021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등

IV. 중견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ADR 관련 법제

1. 중견기업법의 목적 및 중견기업의 정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중견기업이란 (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i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iii)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²⁹⁾

2. 중견기업법상 ADR 관련 조문과 현황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여

29) 중견기업법 제1조.

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i)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i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이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을 의미한다.³⁰⁾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³¹⁾

2016년 시행 중견기업법³²⁾에서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자문 등의 지원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제도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하였다(제17조의3 신설). 2013년 기준으로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3,302개로 전체의 85.8%이었다.³³⁾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도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2013년 기준으로 3,846개사(전체기업의 0.12%)³⁴⁾ 정도가 중견기업에 해당하였다.³⁵⁾ 따라서 중견기업법상 기술분쟁조정·중제제도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의 기술분쟁인 경우에만 적용하게 되었다.

2016년 시행 중견기업법에서는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조문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이 같은 법 제31조 제1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 근거 조문만 바뀌었을 뿐이다. 따라서 중견기업법 제17조의2의 내용은 중견기업법의 2016년 개정 이래 그대로다.

V.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1. 의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중재조정센터는 사인들이 국내 상사분쟁 또는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30)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호 및 제2호.

31) 중견기업법 제17조의2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32)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272호, 2016. 5. 29. 일부개정].

33) 송대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5. 10., 8면 각주 7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Z5J0T9T2L3K1A4F5W3N0Q8D9I5L5&ageFrom=19&ageTo=19>(최종방문일자: 2023. 3. 20.).

34) 국가별 중견기업 비중(근로자 300~999인 기준): 독일 0.57%, 미국 0.57%, 일본 0.05%, 한국 0.08% (위의 검토보고서, 4면 각주 1).

35) 위의 검토보고서, 4면.

중재, 신속중재 및 전문가결정(expert determination)과 같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지식재산과 기술에 관한 분쟁에서 전문화된 국제조직이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구성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의한 도메인이름분쟁해결을 제공하고 있다.³⁶⁾

여기에서 조정은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도달하도록 조정위원회가 조력하는 비공식적인 합의절차를 의미한다. 그리고 전문가결정 절차는 당사자가 (예컨대, 기술적 쟁점, 지식재산의 평가, 실시료율의 확정)과 같은 특정 사안을 1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³⁷⁾

2. 전문가결정규칙

“전문가결정합의”는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문제를 전문가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전문가결정합의는 계약에 전문가결정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이나 별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³⁸⁾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결정 언어는 전문가결정 합의의 언어로 한다. 다만, 전문가는 당사자의 의견 및 전문가결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권한으로 달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전문가는 전문가결정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출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가결정 언어로 번역하여 첨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³⁹⁾ 전문가결정을 개시하기 원하는 전문가결정합의의 당사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에 전문가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동시에 상대방에게 전문가결정요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전문가결정요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b) 전문가결정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i) 당사자들 및 신청인측 대리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

(ii) 전문가결정합의서의 사본;

(iii)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대상에 대한 설명;

(iv) 관련된 권리 및 기술의 특성 표시;

(v) 당사자가 전문가결정에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문서 또는 그 밖의 정보;

(vi) 전문가결정의 범위와 기간에 대한 의견;

(vii) 당사자들이 특정 전문가를 선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전문가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 정보; 당사자들이 특정 전문가의 선정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기대하는 전문가의 자격 요건에 대한 의견;

(viii)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대상에 관하여 개시되었거나 종료된 법적 또는 그 밖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정보; 그리고

(ix) 세계지식재산기구 전문가결정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 수수료 지불.⁴⁰⁾

전문가결정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을 전문가결정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기 원하는 당사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36) <https://www.wipo.int/amc/en/center/index.html> (최종방문일자: 2023. 3. 20.).

37) <https://www.wipo.int/amc/en/center/index.html> (최종 방문일자: 2023. 3. 20.).

38) Rule 1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39) Rule 4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40) Rule 5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중재조정센터에 전문가결정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가결정요청서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⁴¹⁾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당사자들이 전문가결정요청을 고려하는 것을 돕도록 외부 중립인을 선정할 수 있다. 외부 중립인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⁴²⁾

당사자들이 전문가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전문가결정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을 때 또는 답변서 제출 기간의 경과 시점에 전문가 선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전문가결정요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였으나 전문가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전문가결정요청서를 받은 때 전문가 선정을 진행하여야 한다.⁴³⁾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수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단독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⁴⁴⁾

당사자들이 전문가 혹은 전문가 선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당사자들과의 협의 후 전문가를 선정한다.⁴⁵⁾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의 전문가 선정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다음-

- (i) 당사자들이 표명한 의견;
- (ii) 전문가결정 대상;
- (iii) 전문가의 관련된 전문성;
- (iv) 전문가결정을 적절한 신속성으로 완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능력;
- (v) 전문가결정의 언어;
- (vi)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국적 및 위치.⁴⁶⁾

이 가운데 당사자들이 표명한 의견과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전문가 후보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전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⁴⁷⁾

전문가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을 수락함으로써 전문가결정을 적절히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⁴⁸⁾

전문가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전문가는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므로, 예정된 전문가는 선정을 수락하기 전에, 당사자들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에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공개하거나, 그런 상황이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가결정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전문가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는 즉시 그러한 상황을 당사자 및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원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가는 해당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대상에 관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사법, 중재,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도 전문가 이

41) Rule 6 (a)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42) Rule 6 (b)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43) Rule 9 (a)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44) Rule 9 (b)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45) Rule 9 (c)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46) Rule 9 (d)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47) Rule 9 (e)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48) Rule 9 (f)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위의 다른 자격으로 관여할 수 없다.⁴⁹⁾ 전문가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전문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기피 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전문가 선정 통지를 받은 때 또는 기피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가 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재량으로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결정을 중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전문가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전문가가 사임하지도 않을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내부절차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인 것이며 최종적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⁵⁰⁾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전문가의 권한을 종료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그 권한 종료를 즉시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가가 어떠한 이유든 세계지식재산기구 전문가결정규칙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전문가 또는/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그 전문가의 권한을 종료할 수 있다.⁵¹⁾

필요한 경우, 후임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후임 전문가는 전문가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전문가결정은 중지된다.⁵²⁾ 세계지식재산기구 전문가결정규칙을 준수하여 전문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고 각 당사자에게 전문가결정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가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달리 결정하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 전문가결정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나 대리인은 전문가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회의의 목적 설비, 장소, 일시와 같은 순수한 절차적 내용에 관련되거나, 전문가 후보 선정의 경우 후보의 자격 요건, 수임가능성 또는 당사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을 논의하기 위한 일방적 연락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는 전문가결정을 적절히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이를 위해 전문가에게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가는 선정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협의하여 전문가결정의 대상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여야 한다.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전문가는 당사자들과 전화회의, 화상회의, 온라인 도구 사용 또는 다른 적합한 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가결정요청서와 이에 대한 답변서 외에도, 전문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가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문서 또는 그 밖의 정보를 포함한 추가 제출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 증인의 진술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장소, 재산, 제품 또는 공정을 검증하거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⁵³⁾

당사자가 전문가결정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전문가는 전문가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계지식재산기구 전문가결정규칙의 규정이나 이 규칙에 따른 요건, 전문가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는 이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⁵⁴⁾

49) Rule 10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50) Rule 11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51) Rule 12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52) Rule 13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53) Rule 14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전문가결정규칙에서 비밀유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i)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 (ii) 정보가 이미 공중에게 공개된 경우, (iii) 전문가결정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 또는 (iv) 법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가결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특히 당사자, 그 대리인 및 조연자, 전문가 및 센터를 포함한다)은 전문가결정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정의 존재를 포함하여, 결정 자체 및 전문가결정과 관련된 혹은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외부인에 공개할 수 없다.⁵⁵⁾ 전문가결정에서 제출하려 하거나 제출이 요구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그 정보를 전문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는 정보가 비밀로 분류된다고 판단하면, 그 비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공개될 수 있는지 결정하여야 하고, 그 비밀 정보가 공개될 사람에게 적절한 비밀유지 협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⁵⁶⁾

전문가는 (i)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 (ii) 전문가의 전문성 및 (iii) 전문가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정보에 근거하여,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고 전문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전문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임시 또는 일부 전문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 (i) 서면으로 한다.
- (ii)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대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 (iii) 전문가결정이 근거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 (iv) 전문가결정이 내려진 일자를 표시한다. 그리고
- (v) 전문가가 서명한다.⁵⁷⁾

전문가는 각 당사자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에 1부씩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전문가결정문 원본을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전문가결정문 원본을 각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⁵⁸⁾ 전문가결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가 전문가결정문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가는 중국 전문가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 직무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⁵⁹⁾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전문가결정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⁶⁰⁾

전문가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당사자는 전문가에게 통지(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 및 상대방에게도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전문가결정문의 오기, 오자 또는 계산 오류를 정정하도록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는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정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가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발적으로 오기, 오자 또는 계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⁶¹⁾

54) Rule 15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55) Rule 16 (a)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56) Rule 16 (b)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57) Rule 16 (c)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58) Rule 16 (d)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59) Rule 16 (e)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60) Rule 16 (f)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61) Rule 16 (g)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전문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문제의 회해에 합의한 경우, 전문가는 전문가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문제의 회해에 합의한 경우 이외의 다른 이유로 전문가결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는 전문가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⁶²⁾

세계지식재산기구 전문가결정규칙의 규정이나 요건 또는 전문가가 내린 지시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에 대하여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문가결정을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⁶³⁾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 수수료, 전문가 수당, 전문가가 지출한 비용, 그 밖의 전문가결정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⁶⁴⁾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및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전문가결정에 관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⁶⁵⁾

당사자 및 선정을 수락한 전문가는, 전문가결정의 준비 또는 진행 중에 스스로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서면이나 구술로 된 진술 또는 발언도 명예 훼손, 문서에 의한 명예 훼손, 구술에 의한 명예 훼손, 그 밖의 유사한 주장의 근거나 유지의 기반으로 삼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금지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⁶⁶⁾ 당사자들은 준거법이 인정하는 한, 전문가결정의 대상에 관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진행이 전문가결정 개시일부터 전문가결정 완료 또는 종료일까지 중지되는 것에 동의한다.⁶⁷⁾

VI. 개선방안

[1]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조정 및 중재와 관련하여 중재사건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방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허용되는 조정과는 달리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중소기업기술 분쟁과 관련하여 사전에 중재합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중견기업의 경우, 중재절차에서 조정을 1단계로, 중재를 2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재의 단심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의 중재에서의 조정/중재 2단계 절차다.

[2]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의 전문가결정규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3] 중견기업법 제17조의2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대 대기업 사이의 분쟁에는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사이의 분쟁을 배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하여 중견기업법 제1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의 입법당시의 현황과 지금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항의 입법 당시에는 중소기업청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행정청이었으나, 지금은

62) Rule 19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63) Rule 20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64) Rule 24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65) Rule 25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66) Rule 26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67) Rule 27 of 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소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독립한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므로 이러한 사정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4] 서로 다른 조정기관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각 조정기관의 판단이 상이함을 당사자가 추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정과 소송과의 상관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정계속중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률에 조정절차를 중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법원연계조정인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르면,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법원연계조정이 아니더라도 직권조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

[6] 그리고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및 제3자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온라인(또는 메타버스)상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성공을 위해 위 네 원칙 이외에도 사이버보안의 완결성 및 당사자 신원의 동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별첨 1]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 [예: 비밀유지서약서(외부출입자, 외부계약) 제11조 제2항과 관련하여 중재 활용 가능]

1.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국내거래의 경우)⁶⁸⁾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2.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국제거래의 경우)⁶⁹⁾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 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city / country]

68)

http://www.kcab.or.kr/jsp/kcab_kor/contract/cont_01_02.jsp?sNum=7&dNum=1&mi_code=cont_01_02#data_guide16 (최종방문일: 2023. 3. 20.).

69)

http://www.kcab.or.kr/jsp/kcab_kor/contract/cont_01_03.jsp?sNum=7&dNum=1&mi_code=cont_01_03#data_guide11 (최종방문일: 2023. 3. 20.).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별첨 2] WIPO 표준 사전합의조항 및 사후합의계약⁷⁰⁾ (국문본)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표준 사전합의조항

가. 조정

"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

나.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중재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만일 어떤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신청을 하면 그 분쟁이나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신속]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결정

"본 계약 및 본 계약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전문가 결정에 회부될 내용의 범위에 대한 서술]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WIPO조정규칙에

70) <http://www.wipo.int/amc/ko/clauses#1> (최종방문일: 2023. 3. 20).

따라 조정예 회부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만일 어떤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가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예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전문가 결정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전문가 결정 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예 회부하도록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예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전문가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분쟁이나 (의견의) 차이가 WIPO 전문가 결정 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예 회부되도록 한다. 그 전문가의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전문가 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

라. [신속] 중재

(1) 중재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예 회부, 중재예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 중재인][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예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예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2) 신속중재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신속중재규칙예 따라 중재예 회부, 중재예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예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예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3) 조정 후, 조정예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중재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만일 어떤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분쟁이나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 중재인][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4) [신속]중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는 전문가 결정

"본 계약 및 본 계약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전문가결정에 회부될 내용의 범위에 대한 서술]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전문가 결정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단, 그 결정문 통지 후 [30]일 내에, 전문가 결정에 회부된 사안이,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마. 전문가 결정

(1) 전문가 결정

"본 계약 및 본 계약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전문가결정에 회부될 내용의 범위에 대한 서

술]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차이점은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양당사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전문가결정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2) [신속]중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는 전문가 결정

"본 계약 및 본 계약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전문가결정에 회부될 내용의 범위에 대한 서술]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전문가결정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단, 그 결정분 통지 후 [30]일 내에,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3)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결정

"본 계약 및 본 계약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전문가 결정에 회부될 내용의 범위에 대한 서술]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WIPO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만일 어떤 분쟁 또는 차이점이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전문가 결정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전문가 결정 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전문가 결정 신청을 하면 그 분쟁이나 의견의 차이는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되도록 한다. 그 전문가의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전문가 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2. 현재의 분쟁: 표준 사후합의계약

가. 조정

(1) 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 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2)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중재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 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이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며, [신속]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분쟁은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신속]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3)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들 간의 분쟁 또는 (의견) 차이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

또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 또는 (의견) 차이가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전문가 결정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전문가 결정 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전문가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분쟁이나 (의견) 차이는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되도록 한다. 그 전문가의 결정은 양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전문가 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나. [신속]중재

(1) 중재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여,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은 [특정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2) 신속중재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3)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중재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이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분쟁은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 중재인][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4) [신속]중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는 전문가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전문가 결정에 회부될 사안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단, 그 결정문 통지 후 [30]일 내에,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또는 차이점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 전문가 결정

(1) 전문가 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전문가 결정에 회부될 사안에 대해 간단히 기술]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2) [신속]중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는 전문가 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전문가 결정에 회부될 사안에 대해 간단히 기술]

전문가 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단, 그 결정문 통지 후 [30]일 내에,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또는 차이점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3)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 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이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전문가 결정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전문가 결정 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전문가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분쟁이나 (의견의) 차이가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되도록 한다. 그 전문가의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전문가 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별첨 3] 중소기업기술 거래 표준비밀유지협약서(NDA) 전문

1) 제00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 소송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피할 수 있는 제도이나, 경우에 따라 시간 및 비용 면에서 비효율이 있을 수 있음

○ 신속하고 원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및 중재와 같은 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수단(ADR)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조정 (Mediation)

-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립한 조정합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화해(민법 제731조)와 동일
- 조정합의 성립 전의 조정안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가 이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음

* 중재 (Arbitration)

-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불복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https://www.ultari.go.kr/>)

○ 설치 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조직

- 50명의 전문가로 구성

(판사, 변호사 등 직능위원 24명, 기계, 소재 등 기술분야 전문위원 26명)

○ 소요 기간

- 조정의 경우 3개월, 중재의 경우 5개월 소요

○ 비용

- 조정 또는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법률대리인 및 소송비용 지원
- (필요시) 법률전문가 자문 및 기술가치평가 등 지원

[별첨 4] 하도급법상 표준비밀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5항).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i)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ii)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iii) 비밀유지의무, (iv) 목적 외 사용금지, (v)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배상, (v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의3을 위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0)의 개별조문 검토⁷¹⁾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계속 보유하는 경우,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대상인 기술자료의 사용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0)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3)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비밀유지계약 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도록 하며, 동명이인 방지 등 명단 특정을 위해 이메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0)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복사해서는 안됨

71) 이규호, 「기술자료 관련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용역 최종보고서, 2021. 12. 14., 71-81면 (이하 “이규호, 기술자료 관련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보고서”).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된 원사업자의 임직원명단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 업무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가 그에 해당할 것이다. 이 경우 매번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원/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등을 고려하여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된 원사업자의 임직원명단 변경 필요시에는 수급사업자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변경되는 임직원명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본문) 제8조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0)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수급사업자의 사전서면동의를 없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원사업자는 물리적 설비 설치, 비밀관리지침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는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그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0)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스스로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 이외에 비밀이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적극적 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최소한 “합리적인 관리조치” 수준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종전의 ‘합리적 노력’이란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 <예시 1> 자료에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극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 <예시 2>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시 또는 명령한 경우

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 <예시 1> 임원, 해당 업무 담당자 등 특정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
- <예시 2> 암호 설정, 시정장치, 지문인식장치 등으로 접근을 제한한 경우

다.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 <예시 1> 임직원, 거래상대방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한 경우
- <예시 2> 취업 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

5)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계약서에서 미리 정해놓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원사업자와 제3자는 별도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0)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0)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

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때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므로 증액배상은 이 부분에 넣을 수 없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상 제한배상이 원칙이다. 또한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에서는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하도급법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하도급 제35조 제2항에서는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제12조의3 제3항의 비밀유지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 위반시 배상금액은 ‘수급사업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7)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반환 또는 폐기하

여야 하며, 폐기시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비밀유지계약의 종료 또는 본 업무(목적사업)가 종료된 후, 더 이상 원사업자에게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기술자료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 또한, 사후적인 유용 및 유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환일 또는 폐기일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0)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급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원사업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권리의 부존재 등

비밀유지계약이 있더라도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0)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비밀유지계약과 지식재산의 실시나 이용허락은 별개이므로 비밀유지계약이 있더라도 지식재산의 실시나 이용허락(라이선싱)이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제6조는 제공한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 그에 파생되는 권리 등이 원사업자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사업자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비밀유지계약의 당사자 이외에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공유하는 제3자가 발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으로서, 비밀 유지 의무의 대상자를 명확히 한정하고,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업 간의 거래 교섭은 기업 내부의 직원 및 거래처 등 이해 관계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의무의 주체 및 협약의 수정·변경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교섭(온라인, 메타버스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내지 합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9) 기술자료의 정의

하도급 제2조 제15항에 따르면,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그리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르면,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 반영될 기술자료의 정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경영정보와 관련해서는 하도급법 제18조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 이 계약상 기술자료에는 경영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0)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계약 상대방이 내부규정으로 비밀관리조치 등을 하는 경우 이러한 내부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일부무효의 특칙

(i)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ii)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iii) 비밀유지의무, (iv) 목적 외 사용금지, (v)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배상, (v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전술한 필수적 사항이 유효한 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은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i)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ii)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iii) 비밀유지의무, (iv) 목적 외 사용금지, (v)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배상, (v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유효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비밀유지계약은 전부 무효로 될 것이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12) 비밀유지기간 등

제11조 (비밀유지기간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계약 유지 기간 [또는 위탁 목적물의 납품과 관련된 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00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이 협약이 종료되거나 제1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기술자료를 받는 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및 그러한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계약 기간을 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거래 교섭 및 필요한 자료 등의 전달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 이후의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을 따로 둔 것은 본 계약의 의무 조항인 자료의 폐기, 반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일정한 유지 기간을 두어 무형의 기술자료 유출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 기술자료 제공일로부터 00년’, ‘개별 기술자료의 반환·폐기일로부터 00년’으로 비밀 유지 기간을 일원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영업비밀침해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해당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취득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⁷²⁾의 입장이다.

13) 분쟁의 해결

72) 대법원 2017. 4. 13.자 2016마1630 결정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다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등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00 지방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삼기로 한다.

또는

제13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그리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소송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꾀할 수 있는 제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및 비용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원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공개심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나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중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제발표 III

중견기업 연합 CVC : 선보엔젤파트너스 사례

발표 : 강신형 교수(충남대 경영학부)

중견기업 연합 CVC : 선보엔젤파트너스 사례

2023. 3. 24.

강신형 교수(충남대 경영학부)

0. 강사 소개: 강신형(姜信馨)

- 1992~1997년: Kensington School(스페인 바르셀로나)
- 1998~2002년: KAIST 기계공학과
- 2003~2005년: KAIST 경영공학과(석사)
 - "신제품개발 과정에서의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 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지도교수: 배종태 교수)
- 2005~2010년: LG전자 본사 전략기획팀
 - 신사업기획
 - 사업개발(J/V, M&A 등)
 - 스마트폰 사업부 PBL
- 2010~2016년: KAIST 경영공학과(박사)
 - "기업벤처캐피탈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지리적 거리와 신디케이션의 영향"(지도교수: 배종태 교수)
- 2018년: UN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기술경영, 전략경영 등 강의
- 2019년~현재: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창업보육센터장
 - 조직/전략/창업 분야 연구 및 강의

1. 신사업의 핵심

“10년 안에 1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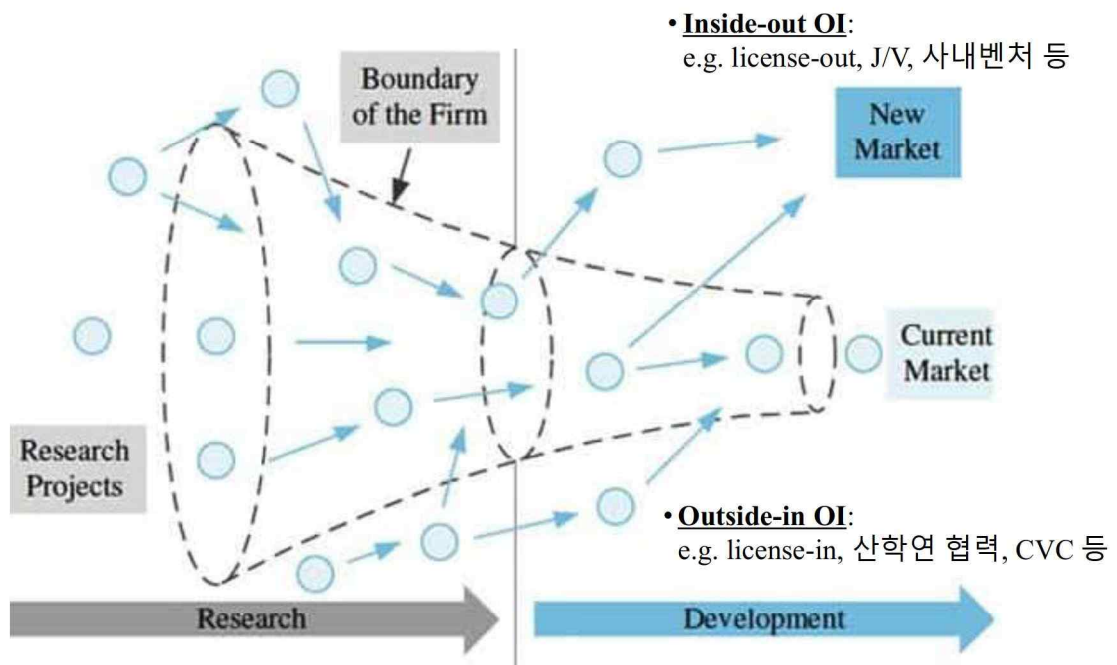
“얼마나 확실한 거야?” “근거는?” “남들도 해?”
“네 돈으로 사업해도 그렇게 하겠니?”

“불확실하니까 신사업이다”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은?

2

2.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



※ 자료원: <https://www.designorate.com/open-innovation-model-in-creativity/>

3

3. 개방형혁신 사례

P&G



- R&D(Research & Development)가 아닌 C&D(Connect & Development)
- 내부에서 진행하던 R&D를 외부에 공개하여 외부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 촉진
- 이를 통해 내부 지식과 외부 지식을 서로 연결하고(connect)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develop) 방법
- 외부 도움을 받아 자체 개발의 실패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

Cisco



- A&D(Acquisition & Development)
- 외부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을 인수하여(acquisition)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이를 내부의 기존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 혹은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키는(develop) 방법
- 기술 및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창업 생태계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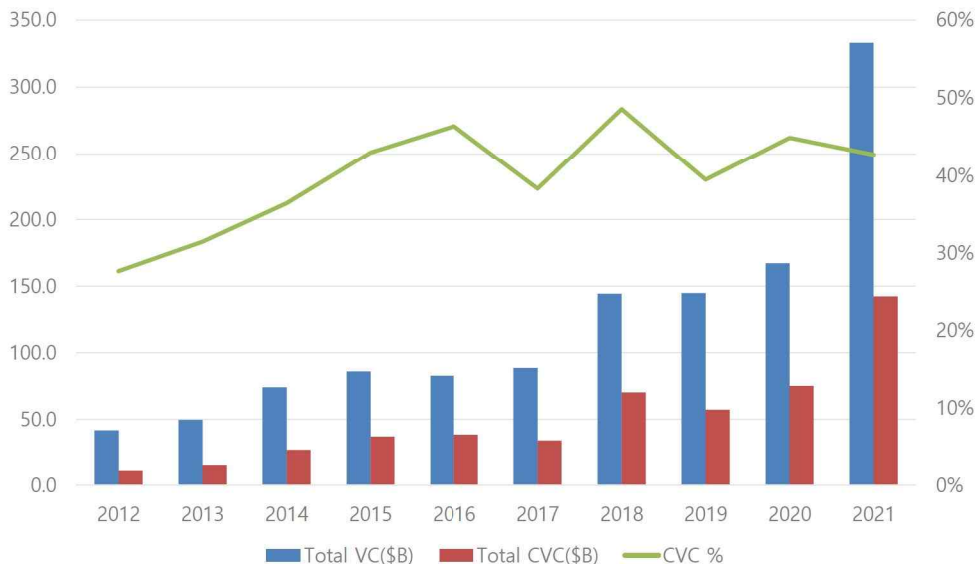
※ 참고: <https://llkorea.net/>

4

4.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정의

- 기업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은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비상장 신생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한 벤처캐피탈 펀드 혹은 투자회사를 의미함 - e.g. 구글 벤처스, 인텔 캐피탈, 블룸버그 베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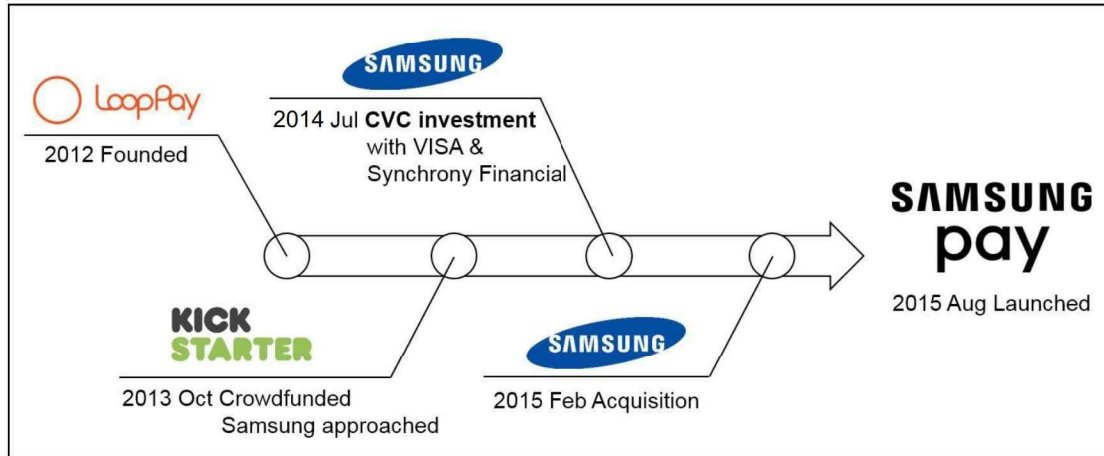


※ 자료원: NVCA Yearbook 2022

5

[참고] 삼성전자의 CVC 활용 사례

삼성전자는 CVC를 통해 LoopPay를 발굴했고 삼성페이를 경쟁사보다 먼저 출시함



CVC는 대기업에만 유효한 전략인가?

6

5. 선보엔젤파트너스 사례 – 선보패밀리



선보공업

- 설립: 1986.8
- 대표: 최금식, 김상도
- 사업: 선박부품, LNG추진선박 모듈 등
- 매출: 745억원(2021년)



선보유니텍

- 설립: 2002.9
- 대표: 김청욱
- 사업: 선박부품, 해양플랜트 등
- 매출: 761억원(2021년)



선보하이텍

- 설립: 2006.8
- 대표: 최금식
- 사업: 선박부품
- 매출: 225억원(2021년)

※ 자료원: 네이버; <http://www.sunboind.co.kr/>

7

5. 선보엔젤파트너스 사례 – 창업 배경



YoungChan Choi
CEO
(Team building, Network)

"Linking Technologies and Industries through investment together with entrepreneurship "



Jonghoon Oh
CEO
(Business Gen. Investment)

"Setting auspicious growth strategies and funding projection plans for startups"



DeokSoo Ko
Director

"Creating market strategies, supporting lab startups and connecting industry and investments"

- 자체개발의 한계: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5년간 150억원 투자) → 10억원씩 분산 투자했다면?
- 자체투자의 한계: 투자 대상 물색 한계 & 느린 투자 의사결정 & 기존 사업 중심

- 선보유니텍의 신사업기획팀 스핀오프: 선보엔젤파트너스 설립(2016.2)

※ 자료원: <https://www.sunbonpartners.com/>; 중견기업 연합 벤처투자 플랫폼 ‘선보엔젤파트너스’, DBR 2019년 12월 1호

8

5. 선보엔젤파트너스 사례 – 성장과정



중견기업 네트워크

- 중견기업 오퍼 네트워크 후보군 도출
- 기준: 재무적 건전성 / 기업가정신 / 인성
- 파운더스하우스 13 결성(2016.10)
- 매달 스타트업과 투자에 대해 학습
- 이후 라운드 테이블로 발전
- 기업 실무진, 스타트업, 투자자들 간의 모임
- 국내 최초 중견기업연합펀드 조성(2017.7)
- 중견기업 15개사와 산업은행이 413억원 출자 (KDB 1호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운영사)



UNIST 협력

- 투자처를 찾기 위해 부산 일대 대학 방문, 그러나 문전박대
- UNIST의 선박무선통신 기술 사업화 추진
- 선보유니텍과 JV 설립
- UNIST와 MOU 체결(2016.9) 후 본격 탐색
- 리센스메디컬: 초고속 냉각 기술 활용한 냉각 국소 마취 기술(울산 최초 TIPS 선정)
- 몇 개의 성공사례 후 교수진의 자발적인 참여

※ 자료원: 중견기업 연합 벤처투자 플랫폼 ‘선보엔젤파트너스’, DBR 2019년 12월 1호

9

5. 선보엔젤파트너스 사례 – 신사업발굴



조광 페인트

- 2018년 선보엔젤과 협력하여 신사업 발굴
- 다양한 기술 검토 후 UNIST 박해성 교수의 백금계 촉매 대체 소재 기술 선정 (수소연료전지 등 활용 가능)
- 사업화를 위해 JV 형태로 RIFORMA 창업



※ 자료원: 중견기업 연합 벤처투자 플랫폼 ‘선보엔젤파트너스’, DBR 2019년 12월 1호

선보 패밀리

- 선보엔젤 초기, 투자 성과는 좋았으나 전략적 연계는 미흡
- 선보엔젤의 투자 경험을 통해 축적한 산업 변화 감지 및 이해 역량과 선보유니텍의 엔지니어링 사업화 역량을 결합
→ SB2025 중장기 전략 수립에 반영
- 스타트업 투자를 통한 4대 그린에너지 분야 신사업 추진
 - 그린수소: ‘엘캠텍’ 지분 투자
 -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 UNIST & 성균관대 교수 창업기업 ‘FES’ 투자
 - 폐기물 가스화: 관련 기업 투자
 - 탄소 포집: ‘카본밸류’ 투자

※ 자료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82917481442466>

10

6. 결론 및 시사점

동태적 역량

- 중소·중견기업 역시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동태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음
- ※ 동태적 역량: 기업 역량을 통합하고 구축하고 재구성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 (Teece, 1997)

감지와 이해(sensing)

-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의 접점을 넓히고 시장, 기술, 산업 변화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

기회포착과 창출(seizing)

-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하나의 기술에 전념하는 대신 다양한 기술 대안의 실물옵션(real option)을 확보하게 됨

자원과 역량의 빠른 재편과 실행(transforming)

- 전략적 제휴, 기업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발 빠른 역량 확보가 가능함

※ 참고: 데이비드 티스 UC버클리 교수가 ‘동태적 역량’, DBR 2019년 1월 1호

11

Q&A

주제발표 IV

제조혁신의 시대,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지원방안

발표 : 오윤환 단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

제조혁신의 시대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지원방안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장

2023년 한국중견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2023. 3. 24. (금)
서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1

글로벌 제조환경의 변화와 제조혁신의 시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글로벌 제조회관의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기후변화 등 메가 트렌드 및 지정학적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 디지털화, 탈탄소화 등이 강조되며 글로벌 제조회관 역시 변화 중

-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 디지털화의 잠재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과 그 응용이 향후 기후 중립과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에까지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
- ✓ 국가, 산업,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뉴노멀(new-normal) 시대 산업혁신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
- ✓ 더 나아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인 기조 속에서 세계 주요국은 탈탄소화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규제방안도 논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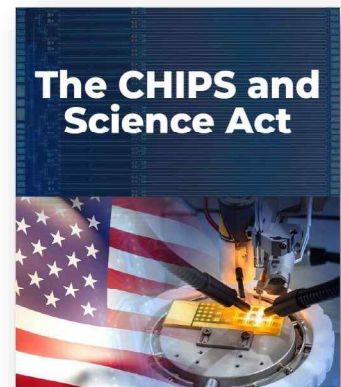
자료: 요원환 외(2022), 『주요국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비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첨단제조패권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



The CHIPS and Science Act 를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 등 첨단품목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연구개발, 제조 인프라까지 총체적인 지원 추진

- ✓ 상원 발의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과, 하원 발의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내용을 절충하여 수정·통과
- ✓ 미국의 제조, 공급망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나노기술, 청정 에너지, 양자를 포함한 미래 산업에서의 선도가 목표
- ✓ 특히 첨단산업에서의 범용목적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처럼 활용되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급망 및 기술 주도권 확보 추구



“America invented the semiconductor, but today produces about 10 percent of the world’s supply and none of the most advanced chips. Instead, we rely on East Asia for 75 percent of global production. ”

“The CHIPS and Science Act will unlock hundreds of billions more in private sector semiconductor investment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production essential to national defense and critical sectors. ”

자료: The White House Statements and Releases (2022.08.09), 『FACT SHEET: CHIPS and Science Act Will Lower Costs, Create Jobs, Strengthen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첨단제조패권 경쟁의 시대와 산업정책의 강화



미국

- 반도체 등 첨단품목에서의 제조, 공급망 강화를 위한 The CHIPS and Science Act 제정(22.8월) **백악관(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에 제조 및 산업정책 전담 조직** 설립 추진*
* Office of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Act (H.R.2279 / S.997)



중국

-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6G, **스마트제조** 등에서의 **기술표준 주도권 확보 R&D 강화*** 추진
* 공업정보통신부 「스마트제조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21~25)」를 통해 스마트제조 R&D 지원



일본

- 중요 물자에 대한 공급망 확보 및 첨단기술의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22.5월) 및 시행 예정(23년)
*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영국

- 코로나19에 따른 제조업 공급망 취약성 극복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제조 기반의 디지털 공급망 연구*** 추진 (영국 연구혁신기구, UKRI)
* Manufacturing made smarter: digital supply chain, industrial research



첨단기술패권 경쟁의 본질은 첨단제조패권 경쟁임을 인식하고
우리 산업생태계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자료: 오윤환(2022), "첨단제조패권 심화 속 미국 혁신전략", 월간 통상 2022년 12월호,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제조환경의 변화 속 우리는...



대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다변화함에 따라 불안정성 또한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산업계에의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

- 코로나19 (보건),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외교), 중국의 사드(THAAD) 경제보복 (국방), 미·중 무역갈등 (제3국 외교)
- 일시적·단기적 서비스업 불황을 넘어, 한국경제의 원동력인 제조업으로까지 영향이 확대

* 중국의 차량용 배선부품(와이어링 하니스) 생산공장의 가동 중단 → 국내 완성차 생산 일시중단
일본의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중단 →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
미·중 패권경쟁, The CHIPS and Science Act →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의 선택 요구



와이어링 하니스



배터리



반도체



(美) The CHIPS and Science Act

디지털 전환과 제조혁신의 시대에 대응을 위한 중견기업 혁신과 도전 지원정책이 필요

디지털 전환과 제조혁신, 우리의 현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주요 부처의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 현황

STEPI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 연대 구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종별 R&D 지원 등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며, 대기업·중견기업이 활발히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을 지향

- ✓ 전자, 자동차, 기계·항공 등 주력산업이면서 대기업 등 민간의 디지털 전환 의지가 강한 산업 중심
-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22.7 시행)은 향후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 디지털 서비스 창업기업 육성,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활용 및 공동 플랫폼 조성 등을 지원

- ✓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제조데이터를 중심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나, 보급·확산 사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사업은 부족하다는 지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전환 관련 주요 기술인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활용과 해당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국내 제조기업의 첨단기술(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현황



스마트제조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과 동시에 크게 확산

* 하지만, 현실에서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생산 도입을 주저하는 경향 (국내 제조기업의 3.64%만 스마트생산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

국내 제조기업이 스마트제조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는 현황과 특징을 다음의 3가지 전략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

- ✓ (채택) 스마트제조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개발·활용하는 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 ✓ (지속) 기업들은 매년 지속해서 스마트제조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개발·활용하는가
- ✓ (연계) 스마트제조를 위해서 어떠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함께 연계하여 개발·활용되는가

국내 제조기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전략 분석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데이터(17~19) 이용: 총 7,018개 기업(관측치 24,259개)의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 4차 산업혁명 기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3D프린터, 로봇, 블록체인, AR/VR 기술

자료: 오윤환 외(2021), 「스마트생산 열린혁신협 운영 및 연구 (2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 제조기업의 첨단기술(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현황



(채택) 노동생산성이 높거나,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개발·활용할 확률이 증가하는 반면, R&D집중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기업 경쟁력 차이가 유지·확대될 우려
- ✓ 스마트생산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채택한 기업은 2.82%로 매년 증가

(지속)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크지만, 활용하지 않은 기업은 계속하여 활용하지 않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큰 상황

- ✓ 4차 산업혁명 기술 미활용 기업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보다 중요

(연계) 로봇 기술이 가장 많이 채택되었으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순

- ✓ 로봇 기술은 단독 채택되는 경향이며, 빅데이터는 2개 이상의 타 기술(IoT, 클라우드, 로봇)과 함께 도입

전략	분석 결과
채택	· 스마트생산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활용할 확률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증가 · 4차 산업혁명 기술별로 분석하더라도, 앞선 결과가 동일. 다만, R&D투자가 각 기술의 개발·활용에 긍정적인 영향
지속	· 스마트생산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활용한 기업 중 38.08%는 다음 해에도 관련 기술을 개발·활용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은 타 기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개발·활용이 매년 지속될 확률이 높은 편 · 스마트생산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대다수(97.53%)가 다음 해에도 개발·활용하지 않음
연계	· 스마트생산을 위해 로봇기술은 단독으로 채택되는 경향이 큼 · 타 기술들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상호보완적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큼(빅데이터-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자료: 오윤환 외(2021), 「스마트생산 열린혁신협 운영 및 연구 (2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스마트제조 혁신) 인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국내 중견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인식

STEPI

|(인식·필요성)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식

- ☑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42.1%는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심이 없더라고 전체 기업의 58.2%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
- ☑ 특히 제조업(60.1%)이 비제조업(55.1%) 보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인식

|(추진현황) 하지만 실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중견기업의 비율은 19.5%로 낮은 상황

- ☑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조직 혁신'이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이 있는 분야는 '공정 혁신'이 7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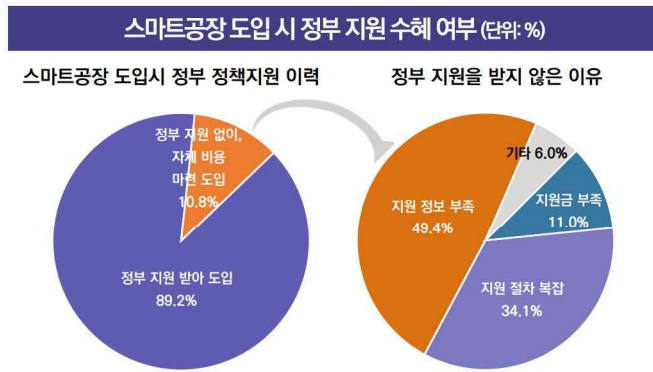
|(애로사항) 디지털 전환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투자비용과 불확실성 문제, 전문 인력 부족, 관련 인프라의 부족을 지적

- ☑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주도의 정책지원에 대해 34.6%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정책지원을 받은 비율은 7.5%에 불과

국내 제조기업의 스마트제조 도입 현황

(재원조달 방안)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입한 기업은 89.2%였으며, 이외의 10.8%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비용을 활용하여 도입

*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원 절차 복잡'(34.1%), '지원금 부족'(11.0%) 등의 순



국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책 홍보도 강화할 필요

자료: 오윤환 외(2021),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 (2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 스마트제조 정책이슈 진단

스마트제조 연관 핵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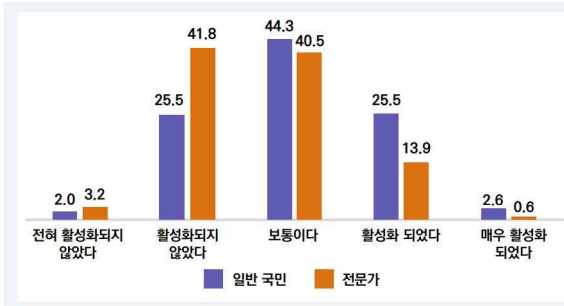
스마트제조와 연관성이 높은 핵심어로 일반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택한 가운데, 전문가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윈'의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조금 더 구체적인 경향

순위	일반 국민		전문가	
	연관 핵심어	응답비율 (%)	연관 핵심어	응답비율 (%)
1	4차 산업혁명	64.6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윈	66.5
2	공장 자동화	36.5	4차 산업혁명	53.8
3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윈	32.0	공장 자동화	38.6
4	데이터 플랫폼	22.1	데이터 플랫폼	21.5
5	탄소중립 및 ESG	9.7	개인 맞춤형 생산	9.5
6	일자리 대체 또는 전환	7.7	대·중소 상생협력	3.2
7	개인 맞춤형 생산	5.7	탄소중립 및 ESG	1.9
8	한국판 뉴딜	6.4	일자리 대체 또는 전환	1.3
9	대·중소 상생협력	4.5	글로벌 가치사슬(GVC)	1.3
10	글로벌 가치사슬(GVC)	2.3	한국판 뉴딜	0.6

주: 탄소중립 및 ESG, 글로벌 가치사슬(GVC)는 2차년도 조사에서의 신규 추가 핵심어
 자료: 오윤환 외(2021),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 (2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내 스마트제조 정책이슈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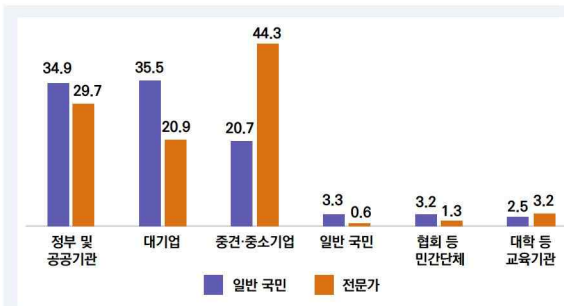
스마트제조 활성화 정도



국내 스마트제조 활성화 정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부정적 인식하는 비중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남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스마트제조 활성화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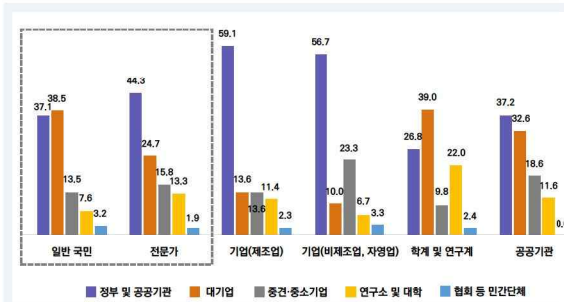
일반 국민 및 전문가 집단 모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전문가의 경우 '중견·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중견·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스마트제조에 참여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필요

국내 스마트제조 정책이슈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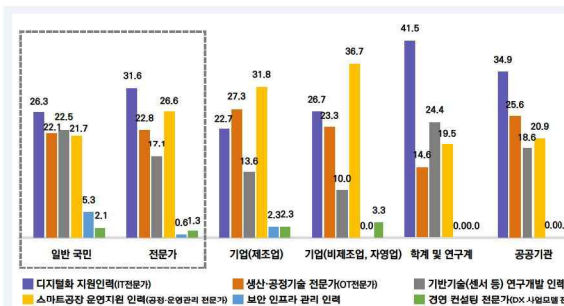
스마트제조 기술 연구개발 투자 주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지만, 일반 국민은 정부보다는 대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

인력양성 시급 분야



일반국민과 전문가 두 집단 모두 '디지털화 지원인력(IT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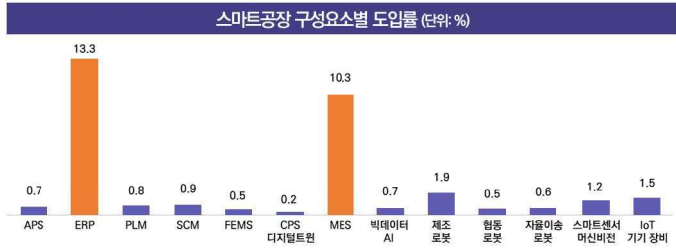


디지털 전환 및 제조혁신 정책의 분기점



그간의 양적인 성장 성과 중심의 정책을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관점으로 전환하여, 질적 성장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

- ☑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목표로 제시한 3만개 보급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다수의 스마트공장이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공급업체 산업이 특정 솔루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계
- ☑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 관리 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전사적 자원 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 정보화 관련 구성요소 중심으로 도입



자료: 오유환 외(2021),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 (2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 주도를 넘어, 민간이 적극적으로 혁신·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우리 기업들이 축적하고 있는 제조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의 니즈를 고려한 지원방안 모색이 중요

- ☑ 既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는 물론, 스마트공장의 도입·활용이 제조공정의 혁신, 더 나아가 기업별 사업 모델의 디지털 전환까지 연계되도록 지원할 필요

스마트제조 테스트베드 기반 디지털 전환 지원 전략



중견·중소기업들의 축적된 제조역량이 디지털화·정보화 역량과 융합되는 OT·IT 융합형 스마트제조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 및 혁신도전 지원

-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시도를 지원하기 위한 접근성과 활용도 높은 스마트제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전환 과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축적된 제조역량과 디지털화·정보화 역량 간 융합을 통한 중견·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및 산업 혁신 선도		
구분	전략	주요 내용
기반구축	OT·IT 융합형 스마트제조 선도 테스트베드 구축	기반 구축 · 지역 공공 혁신주체를 활용하여 OT·IT 융합형 스마트제조 선도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KAMP와 연계
		시범 사업 · 중견·중소 제조기업 현안 해결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 관점에서 우선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추진
활용지원	개별 기업의 스마트제조 시물레이션 툴 보급·활용 지원	금융 지원 · 공공펀드 조성 및 민관 협력 매칭펀드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 비용 부담 완화
		활용 지원 · 플랫폼-모듈형 기반의 수요기업별 맞춤형 시물레이션 툴 보급·활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 · 운영기술(OT)과 정보기술(IT) 간의 융합 교육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확보
기술력 확보	국내 스마트제조 장비 및 시물레이션 툴 경쟁력 제고	스마트제조 장비 · 대·중견·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축 및 공공주도 보급 시범사업 추진
		시물레이션 툴 · 제조데이터 기반의 공정 최적화 시물레이션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디지털 시각화 기술 개발

자료: 오윤환(2022), 「스마트제조 테스트베드 기반의 중소·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 「STEPi Insight」, 28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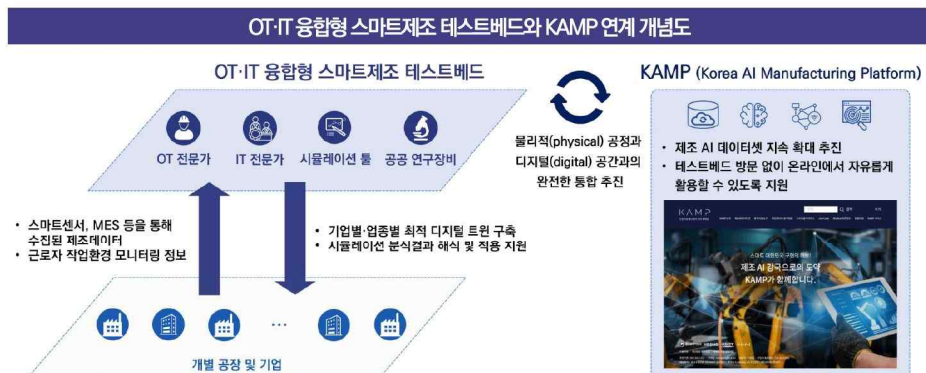
지역 기반의 스마트제조 테스트베드 구축 및 지원



지역 공공 혁신주체를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위한 스마트제조 선도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과 제조혁신의 모델 확산

- 개별기업의 시물레이션 툴 도입 한계 극복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사용 촉진을 통하여 제조 산업생태계 전반의 스마트화 및 산업공유지(industrial commons)의 거점으로 육성
-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식 생태계 구축과 이에 따른 모범 사례(best practice) 공유를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의 스마트화 동기부여 촉진

테스트베드에서의 시물레이션 결과를 온라인에서 쉽게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분석할 수 있도록 공공 클라우드 및 AI 솔루션(KAMP)과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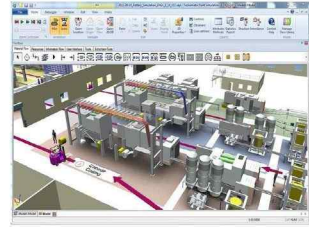
자료: 오윤환(2022), 「스마트제조 테스트베드 기반의 중소·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 「STEPi Insight」, 28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조기업들의 공정기술력 강화 지원

인프라

공공 펀드를 활용하여 공정 시뮬레이션 툴을 구입 및 지역 거점에 공유시설을 설치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

- 공유시설을 기반으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매칭 및 수요기업이 원하는 솔루션을 패키지화하여 보급하는 패키지 솔루션 지원 실시
- 핵심기술 중심으로 툴의 범용성을 확대하여, 제조공정 최적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감, 안정화 기간 단축, 생산 시스템 내 운영 최적화 도모



기술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실감기술(XR) 기반의 차세대 디지털 시각화 기술 연구개발

- 공정 데이터를 보다 실제적으로 시각화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XR 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 디바이스 보급 추진



지역 거점을 활용하여 중견기업들의 현장 접근성이 높은 인프라와 제조 현장에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단계적 지원

제조기업들의 공정 시뮬레이션 활용 촉진

공공 주도로 공용 시뮬레이션 툴을 구입하고 선도 테스트베드에 설치·활용을 지원하여 재원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조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테크노파크(TP) 등 지역 공공 혁신주체에 既 구축된 공공 연구장비와도 연계하여 영세·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전 주기 지원을 강화
- 생산설비, 경영정보 등의 정형 데이터 외에도 축적된 경험, 노하우 등 비정형 정보들도 종합적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 확보

수요기업별 맞춤형 시뮬레이션 툴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성과와 연계 지원

- 범용성 높은 시뮬레이션 툴의 경우, 다양한 기능의 구현이 가능하나 중소 제조기업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며 사용하는 기능도 제한적
- 개별 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기능 기반의 공통의 시뮬레이션 플랫폼에 더해 기업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모듈형 솔루션을 추가 개발·보급하여 수요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 활용을 지원

수요기업 맞춤형 시뮬레이션 플랫폼-모듈형 솔루션 연계 예시



자료: 오윤원(2022), 「스마트제조 테스트베드 기반의 중소·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 「STEPi Insight」, 28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시범사업 선정 및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중견·중소 제조기업들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스마트제조 기반의 해결책 모색과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 분야를 선정하고 우선 추진

☑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중소 제조기업들의 탄소중립 지원 등

* 세계경제포럼(WEF)과 글로벌 컨설팅 기업 McKinsey & Company가 선정한 등대공장 총 90곳(21년 기준, 누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전자제품 분야가 20.0%(18곳), 헬스·제약·의료 분야가 13.3%(12곳), 자동차 산업 분야가 10%(9곳)

재원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 국내 중견·중소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펀드 조성 및 중앙정부, 지방 자치단체, 민간 기업 간의 매칭펀드 추진, 저금리 대출 등 검토 필요

☑ 국내 중견기업 68.8%가 내부유보자금으로 자금 조달하고 있으며, 중견기업 10.1%만 정책자금을 활용 (산업통상자원부(2022), 『201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 (예시) 고도화된 스마트제조 장비 도입 지원을 위한 '리스(lease) 기반의 스마트제조 장비 보급·확산'의 추진도 검토



5

마치며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제조·생산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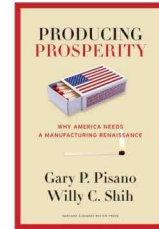
산업공유지 (Industrial Commons)

- ✓ 공장과 소재부품 공급기업 등 공급인프라
- ✓ 제조공정 지식을 갖고 있는 숙련노동자
- ✓ 주변 대학과 기업의 연구소와 R&D인력
- ✓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산업공유지는 **혁신의 원천**이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경쟁력을 가능케 하는 경쟁의 근원

- ✓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완성되는 곳이 제조 현장이며, 유관 전·후방 산업과 인적 네트워크 역시 제조 현장에서 형성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제조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산업공유지 강화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결집할 필요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혁신 도전을 위한 제언

디지털 전환의 추세 속에서 국가·산업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견·중소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

- ✓ 안정적·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
- ✓ 기반시설 및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기존 사업들 위주의 구조 재편은 한계

국내 제조 중견·중소기업들이 가지는 핵심 역량은 성공의 경험과 축적된 제조역량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도약하는 것이 바람직

- ✓ 디지털 전환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디지털 ICT 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잃게 될 우려
- ✓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 생애주기상 도약을 위한 투자가 중요한 시점인데 반해, 우리 기업의 혁신투자는 낮은 상황

* 업력 20년초과 성숙기업은 업력 20년 미만 기업 대비 연구개발 투자율이 전반적으로 낮음 (이석훈, 2019)

디지털 전환 및 제조혁신 추세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하여 기업 내 유보금 등 과도한 금융자산 확보 보다는 신규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가 중요

- ✓ 정책당국 역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인력개발 등 혁신활동에 투입예정인 금액을 사업용 자산으로 평가하고 기업승계 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등 혁신친화적으로 정책을 검토할 필요



감사합니다

오윤환 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장
(yhoh@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종합토론

토론 : 강형구 교수 (한양대 경영대학)

벤처금융의 질적 성장과 효율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강형구** · 신지만***

논문초록

본 연구는 질적, 효율적 성장을 위한 벤처금융 생태계의 발전 방안과 제도 경쟁력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첫째, 실리콘밸리식 벤처캐피탈 계약을 적극 도입을 검토한다. 사전적인 의미에만 집중하는 원론적인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담보를 고려한다. 둘째, 국내 대기업의 전략적 리소스와 역량을 활용 방안을 고려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금산분리의 기계적 적용도 경계해야 한다. 셋째, 국내 플랫폼 기업과 벤처 생태계간 상생 구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경쟁력을 설계한다. 넷째 OCIO를 통한 벤처금융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펀드를 육성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주제어

플랫폼의 플랫폼, 실리콘밸리식 벤처캐피탈 계약,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제도경쟁력

경제학 문헌분류

L53, L86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SC0204, SC0607

접수일(2022년 10월 07일), 1차 수정일(2022년 11월 11일), 게재 확정일(2022년 12월 16일)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2200000003447)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박사과정

How to achieve the Qualitative Growth of Venture Capital and the Creation of Efficient Venture Ecosystem*

Hyoung-Goo Kang** · Jee-mahn Shin***

Abstract

This study highlights institutional competitiveness and discusses how to develop the Korean venture finance ecosystem qualitatively. First, actively introduces Silicon Valley-style venture capital contracts. Prevent the dogmatic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Ensure legal stability. Second, utilize strategic resources and capabilities of domestic conglomerates. To this end, relax the regulations on 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in particular. Avoid dogmatic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finance-commerce separation. Third, design a win-win structure between domestic platforms and the venture ecosystem. Encourage Korean platforms to evolve into a platform of platforms. Fourth, use OCIO to concentrate venture finance resources and capabilities and foster global mega funds.

Keywords

platform of platforms, Silicon Valley-style venture capital contract, 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OCIO), institutional competitiveness

JEL Classification

L53, L86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Hanyang University(HY-202200000003447)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inance, Hanyang University Business School, Korea

*** Department of Finance, Hanyang University Business School, Korea

1. 서론

오늘날 혁신성장은 중소기업 정책,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 핵심적인 화두이다. 이른바 중소기업 분야의 3대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주요 사업에서도 혁신과 성장이 주요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한데 이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간주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혁신성장을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계의 연구에도 부합한다(Foreman-Peck, 2013; Parrilli & Elola, 2012).

그렇다면 과연 중소기업과 혁신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왜 중소기업에서 혁신이 강조되는가? 또한 혁신이 강조된다면, 단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천적 과제로서 혁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 의식 속에서 특히 마지막 질문에 주목하고자 한다. 혁신은 중소기업에게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 가능한 것인가?

본 연구는 이 실마리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추동자(key player)로서 벤처 및 이들 벤처를 육성하는 벤처캐피탈의 실질적 기능의 발휘와 중소기업 혁신 사업의 성장 기반으로서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에서 찾고자 한다. 즉, 디지털과 플랫폼을 중소기업 혁신 성장의 키워드로 인식한다(Chemmanur et al., 2014; Florida & Kenney, 1988; Kortum & Lerner, 1998; Metrick & Yasuda, 2021).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의 불가측성에 대응하여 창업자와 투자자 간 의사결정상의 권리 배분(allocating control rights)을 구체화하는 실리콘밸리식 투자 계약을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기업에 대한 전략적 인수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 기업벤처캐피탈(CVC)에 대한 "100% 자회사-200% 부채비율-40% 외부자금조달-20% 해외투자"라는 기계적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벤처생태계 강화를 위한 플랫폼의 기능에 주목하며, 앱스토어, 운영체제, 클라우드 등의 플랫폼 인프라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민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민간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벤처투자펀(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을 만들어 경쟁력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트랜치(tranche) 방식의 투자증권 유통으로 연기금을 포함한 공공자금의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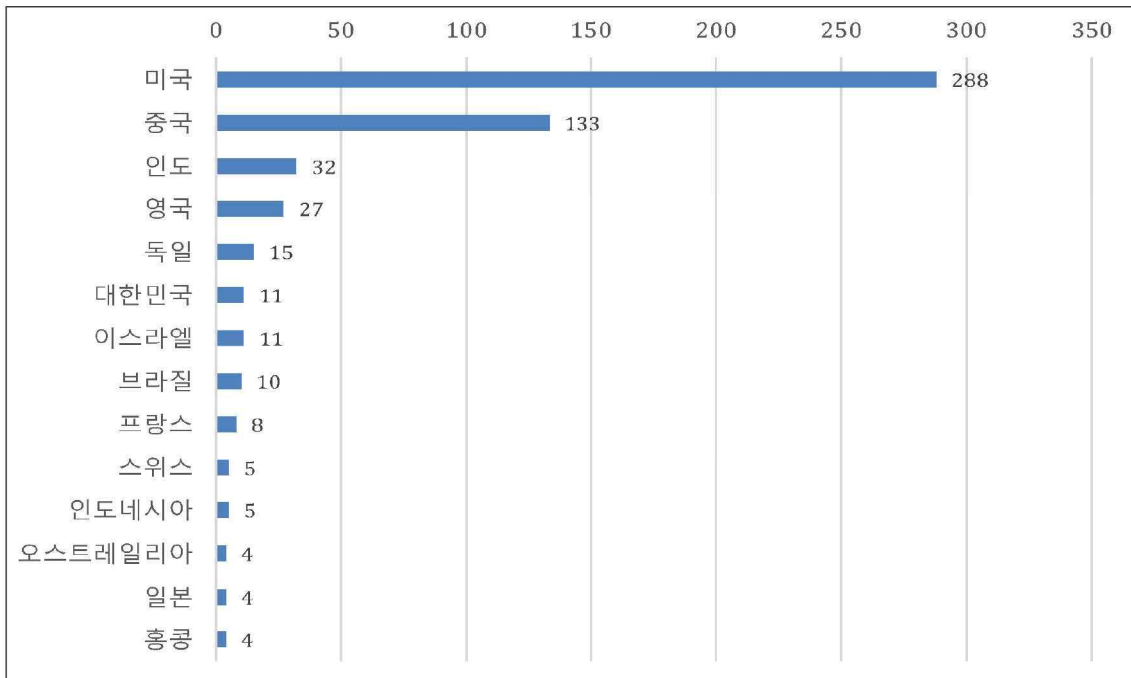
이 같이 본 연구는 혁신성장의 키워드인 디지털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구체적 혁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혁신 금융을 보다 실천적으로 탐색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질적성장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연구배경과 질적성장 측면의 정책방향 전환에 대해 서술한다. 3절은 불완전계약(incomplete contracts)의 학술적 근거를 소개하고 실리콘밸리식 VC계약의 도입 필요에 대해 논의와 대기업 집단의 전략적 리소스와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CVC 활용의 제

약과 그 해소 방안, 그리고 벤처생태계 기반으로서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 방안, 벤처투자풀 운영을 통한 벤처금융 혁신을 검토한다. 4절은 본 연구의 결론이다.

II. 질적성장과 효율성의 중요성, 정책적 배경

1조 가치의 비상장 기업을 일컫는 유니콘은 한정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실리콘밸리, 센젠, 이스라엘, 영국의 캠브리지가 좋은 예다. 다행히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비중 있는 숫자의 유니콘들을 이미 배출해왔다. 기준에 따라 그 숫자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10개 이상이고 글로벌 순위권이다(그림 1). 이러한 변화는 그간 재벌위주의 경제시스템으로 비판받아 온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구조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림 1〉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2021년 4월 기준)¹⁾



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96928/number-of-global-unicorns-by-country/>

2021년 12월 현재 중기부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유니콘은 15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IPO로 유니콘 상태를 졸업한 카카오게임즈, 우아한형제, 쿠팡, 하이브 등은 이미 제외되어 있다(아래표 참고). 정부는 물론 대다수의 학자들도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며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림 2> 대한민국 유니콘 기업 개요2)

< 국내 기업가치 1조원 돌파 이력기업 및 현재 유니콘기업 현황 >

기업명	분야	CB Insights	현재 유니콘기업	비고
엘로모바일	모바일	○	○	-
엘앤피코스메틱	화장품	○	○	-
크라프트온	게임	○	○	-
비바리퍼블리카	핀테크	○	○	-
야놀자	O2O서비스	○	○	-
위메프	전자상거래	○	○	-
지피클럽	화장품	○	○	-
무신사	전자상거래	○	○	-
에이프로젠	바이오	○	○	-
쏘카	카셰어링	○	○	-
컬리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	○	-
A사 (기업명 비공개)	도·소매업	×	○	-
티몬	소셜커머스	×	○	-
두나무	핀테크	×	○	-
직방	부동산중개	×	○	-
우아한 형제들	O2O서비스	△	×	M&A
CJ게임즈	게임	△	×	M&A
쿠팡	전자상거래	△	×	IPO(美, NYSE)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	×	IPO(코스피)
카카오게임즈	게임	×	×	IPO(코스닥)
더블유게임즈	게임	×	×	IPO(코스피)
필어비스	게임	×	×	IPO(코스닥)
잇츠한불	화장품	×	×	IPO(코스피)
23개		11개	15개	-

※ (참고) △ : 과거 CBinsights에 유니콘기업으로 등재됐으나 제외된 기업

실제로도 한국은 이미 벤처캐피탈 투자 강국이다. 절대 금액 기준 투자액이 2019년 기준 2,708m USD인데, 이는 달러 기준 일본 (2,503m USD), 프랑스 (2,165m USD), 독일 (2,380m USD), 호주 (487m USD) 등을 능가한다(표 1).

2) 출처는 중기부. 세모는 과거 CBinsight에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되었으나 현재 제외

〈표 1〉 국가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단위 : 백만USD, 출처: OECD 2019)³⁾

국가명	투자규모	국가명	투자규모
미국	135,648.69	아일랜드	184.93
영국	3,349.98	노르웨이	158.31
캐나다	3,286.87	헝가리	154.87
대한민국	2,708.44	러시아	131.00
일본	2,502.53	폴란드	112.98
독일	2,379.67	오스트리아	90.42
프랑스	2,164.94	뉴질랜드	73.92
네덜란드	701.94	포르투갈	51.49
스페인	655.18	에스토니아	40.06
스위스	553.56	체코	27.20
오스트레일리아	487.31	그리스	27.06
남아프리카공화국	481.69	슬로바키아	24.60
스웨덴	402.57	루마니아	23.54
벨기에	395.83	룩셈부르크	17.31
덴마크	352.44	라트비아	6.47
핀란드	321.57	리투아니아	4.88
이탈리아	261.12	불가리아	3.95

특히 GDP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0.16% of GDP). 이는 다른 상당 수 국가들을 압도하고 벤처금융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갖춘 미국 (0.63% of GDP), 캐나다 (0.18% of GDP)에 이은 순위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주도 벤처생태계 양성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는 국내 정부와 기업들이 벤처 생태계 발전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표 2).

3)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VC_INV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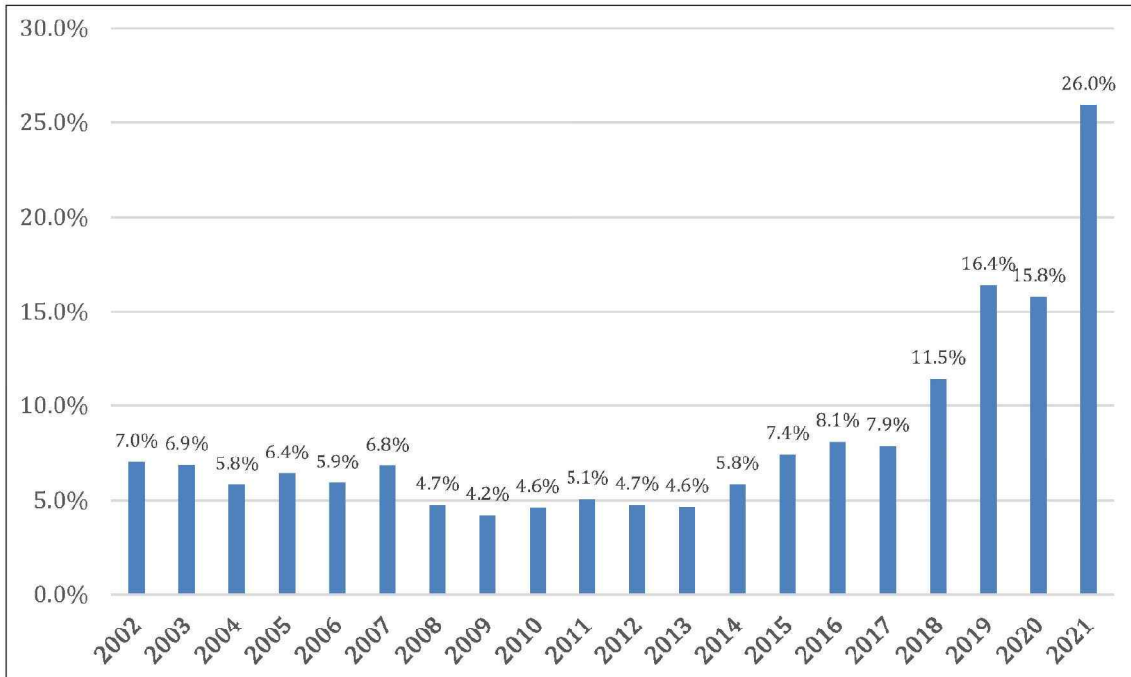
〈표 2〉 국가별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비중(출처: OECD 2019)⁴⁾

국가명	GDP 대비 비중	국가명	GDP 대비 비중
미국	63.29%	아일랜드	4.64%
캐나다	18.87%	노르웨이	3.90%
대한민국	16.45%	오스트레일리아	3.53%
남아프리카공화국	13.71%	뉴질랜드	3.48%
에스토니아	12.73%	룩셈부르크	2.43%
핀란드	11.96%	슬로바키아	2.34%
영국	11.83%	포르투갈	2.15%
덴마크	10.07%	오스트리아	2.03%
헝가리	9.47%	라트비아	1.90%
프랑스	7.97%	폴란드	1.90%
네덜란드	7.74%	그리스	1.32%
스웨덴	7.58%	이탈리아	1.30%
스위스	7.57%	체코	1.09%
벨기에	7.42%	루마니아	0.94%
독일	6.16%	리투아니아	0.89%
일본	4.94%	러시아	0.78%
스페인	4.70%	불가리아	0.58%

2002년 이후 최근까지 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를 살펴볼 때,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13년 이후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벤처투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아래 표를 참고). 2007년 이전까지 한국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GDP 0.05% 이상을 유지했는데 금융위기 이후 0.05% 이하로 하락했다. 그 이후 2015년 0.07%, 2016년 0.08%, 2017년 0.05%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본격적으로 성장 폭을 늘리면서 2018년 0.11%, 2019년 0.16%, 2020년 0.16%로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아래 그림 참고). 신규 벤처투자 역시 2017년 2.38조원에서 2020년 4.3조, 2021년 1월-9월 사이 5.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⁵⁾

4)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VC_INVEST

5)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2021.12.20.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1695>

〈그림 3〉 연도별 한국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비율 추이(출처: OECD)⁶⁾

2018년 이후 벤처금융의 폭발적 성장은 흔히 제2 벤처붐이라 불리기도 한다. 벤처 생태계의 성장이 제조업과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해온 한국 경제에 중요한 보완재 역할을 수행하고, 성장의 축으로 기능하고 기존 기업의 개방혁신(open innovation), 선순환, ESG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의 향후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기업간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간의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대기업의 발전과 함께 벤처생태계 발전은 필수적이다.

실제로도 2018년~2021년까지 대기업이 운영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395개 사내벤처팀, 분사, 창업기업을 지원해왔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국내 대기업 44개사를 포함하고 있다.⁷⁾

결론적으로 한국이 적어도 양적으로는 이미 벤처 강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앞으로의 직면할 도전적인 여건들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생태계간 경쟁 격화로

6)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VC_INVEST

7) <https://m.etnews.com/20210531000192>

벤처생태계, 특히 벤처금융에 대한 투자 경쟁 역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특히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충격, 팬데믹, 인구, 양극화, 데이터와 혁신기업에 대한 쟁탈전,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ESG에 대한 강조 역시 중요한 도전이다.

향후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도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계속 추구하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질적 성장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질적성장, 효율성, 규제 경쟁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규제샌드박스 사례는 597건을 달성했는데 이는 2019년 195건, 2020년 209건, 2021년 11월 현재 193건을 포함한다.

질적 도약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특히 시장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 시장의 승자선택(winner picking) 역량을 발전/활용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실패 (market failure) 완화와 마켓디자인(market design)이 필수이며 이는 2017 하반기 이후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은 2017년 이후 벤처생태계 관련 주요 내용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질적, 효율성 위주의 정책이 강조되는 경향이다.

〈표 3〉 연도별 국내 중소기업 정책 개요(2017-2021)

발표시기	대 책 내 용
'17.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 혁신의 확산과 혁신성장·창업 토대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마련
'18.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 펀드 결성·운영에 민간 창의성 적극 활용, 혁신창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 유도, 정책펀드간 연계성 강화 등 ■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하에 벤처 스스로 자생력과 확장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8.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기술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8.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창업정책의 성과가 지속·확산되도록 국민의 관심 및 참여 촉진, 성공사례 창출, 지역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추진
'19.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 강화와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발표시기	대 책 내 용
'19.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부지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 공간을 명실상부한 혁신성장 산업생태계로 조성
'20.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자금 확대 등 융자 및 보증 공급 추가 지원, 벤처투자 추가 공급 유도 등을 통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 K-유니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업을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예비유니콘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스케일업 여건 구축
'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R&D 프로젝트 기반 복합금융 마련 등을 통한 기술 혁신기업 맞춤형 복합금융 확충
'21.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년창업 중심거점 조성 및 역할 강화, 청년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준비된 청년들의 도전을 사회가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21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해외 VC네트워킹 확대 ■ 민간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 ■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21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경제정책방향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개선 등 제도적 기반 - 벤처, 스타트업 글로벌화, 중간회수펀드 활성화 - 민간투자 방식 다양화: 유한책임회사(LLC 형) 벤처캐피탈

특히 2021-08-26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기부에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을 통해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를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 정보비대칭성을 포함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투자회사가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신에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개별 펀드별로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로 설립해 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를 수행”⁸⁾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운용인력이 딜소싱(Deal Sourcing)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성과가 보너스로 직접 연결되어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펀드간 성과가 혼합되지 않아 무임승차를 막고 유능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해외 VC의 국내 벤처투자에 대한 출자도 용이해질 것이다.

실리콘밸리식 지배구조는 질적 성장과 함께 투자효율성 향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는 상당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합리적인 제도 도입만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향

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180>

후 정책방향과 이에 관한 학술적 기반을 논의한다.

III. 향후 정책 방향과 학술적 기반

1. 실리콘밸리식 벤처캐피탈 계약 도입 및 정착의 필요성

1) 실리콘밸리식 계약의 국내 도입 여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글로벌 생태계, 기술 경쟁에서 양적 성장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질과 효율성 위주의 정책방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식 VC계약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ghion & Bolton, 1992; Dewatripont & Tirole, 1994; Kaplan & Strömberg, 2003). 실리콘밸리식 VC계약의 뚜렷한 특징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은 현금흐름 (cash flow rights), 경영참여 (eg, board rights), 투표권 (voting rights), 청산우선권 (liquidation rights), 기타 경영에 관련된 사항 (other control rights)이 다 분리되어 계약되고 이들이 추상적인 법리 논쟁과 제도적 불확실성 등 없이 안정적으로 인정/작동된다는 점이다(Kaplan & Strömberg, 2003).

예를 들어,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비울만큼 배당을 받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주총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협상의 대상이며 조건부 (state-contingent), 다른 말로 시나리오 기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스닥에서 IPO시 창업자에게 주어지는 복수의결권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성공한 창업자에게 의사결정권(control right)을 늘리기 위한 장치인데 이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식 VC 계약이다. 실리콘밸리식 계약은 창업가가 성공할수록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주고, 창업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투자자의 경영참여가 높아진다. 그런데 창업가가 회사를 성장시켜 추가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IPO)를 하게 되면 오히려 창업자의 지분이 줄어들며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타개하고 성공하의 (“good states”) 창업자의 의사결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수의결권 등이 등장하게 된다.

실리콘밸리식 VC 계약은 201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Hart의 불완전계약이론, 이를 확장한 주요 경제학자들의 예측 (prediction)에 부합한다(Aghion & Bolton, 1992; Dewatripont & Tirole, 1994; Kaplan & Strömberg, 2003). 결국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실리콘밸리 등 실무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실리콘밸리식 계약 도입은 매우 국내 벤처생태계 질적성장과 효율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실리콘밸리식 계약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정부 등의 벤처금융을 확대한다면 더욱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복수의결권, 미국식 우선주 도입 등 실리콘밸리식 VC 계약을 도입할

때 계량적, 학술적 성과와 과학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 건설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계약방식에 대한 배경과 맥락 역시 현실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최근 2021-10-28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분호 부장판사) 판결은 실리콘밸리식 VC계약 관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해당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⁹⁾

계약 시점

-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사가 컴퓨터시스템 제조·판매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2020나2049059)
- B사는 2016년 12월 전환상환우선주 (RCPS) 20만주를 발행
- A사는 B사로부터 RCPS를 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 A사는 '투자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B사가 향후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
- 해당 약정을 위반하면 투자금을 조기상환하고, 투자금 상당액의 위약벌을 부담

계약 이후 상황

- 이후 A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B사가 2018년 8월과 11월에 각각 18만주, 8만주의 신주를 발행
- A사는 B사를 상대로 "투자금의 조기상환금 20억원과 위약벌 20억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

법원 판결

-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
- "회사 경영과 관련해 일부 주주에게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회사와 신주인수인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주식에 표창된 권리를 넘는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고, 약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

기타 재판부 언급

- "신주인수로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A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9)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73923>

부여해 회사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 “배당가능 이익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해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
- “이른바, '황제주'와 같은 사실상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증류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
-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신주발행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존 주주들을 매우 불공평하고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만들고, 나아가 그러한 계약 내용은 적절한 공시방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의 거래 안전도 해할 우려”

판결에서 지적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중요한 원칙이고 자본시장의 중요한 근간임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자본조달 과정에서 국내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계약되고 있는 사전동의권과 같은 계약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계약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나 대책이 필요하다.¹⁰⁾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투자자와 창업자들 간의 다양한 계약관계를 모색하는 실리콘밸리식 VC 계약 정착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한편 투자자-기업간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나열하고 여기에 투자자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리콘밸리식 VC 계약은 물론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계약(Chun, 2021)인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해이,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각각에 대하여 시나리오 별로 혹은 조건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관찰가능한 신호 (observable signal) 예를 들어 매출이나 자금상황 등을 기반으로 누가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를 배분 (allocating control rights)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VC 계약은 대주주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이 아니고 창업가들도 이를 바라지 않는다. 창업가의 유인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털이 초기기업의 경영권을 투자시점에서 획득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들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자의 경영참여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한다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렵고, 결국 벤처금융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2020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은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방식의 투자법인데, 기업가치 산정으로 인한 이견으로 투

10) 관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에서도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을 등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논리로 주주간 수익급 지급약정이 무효화되었다.

자 유치 자체가 어려운 초기기업들에 좋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선행 투자자의 지분가치를 후속 투자 유치시 확정하는 구조인데, 투자자 입장에서선 모험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고, 창업자 입장에서선 초기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저평가 받는 위험을 해소해준다. 이처럼 다양한 계약 방식의 모색을 통해 최적화된 자본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불완전계약과 실리콘밸리식 벤처캐피털 계약

실리콘밸리식 VC 계약은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 부합한다. 2016년 노벨위원회는 Oliver Hart와 Bengt Holmström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¹¹⁾

Modern economies are held together by innumerable contracts. The new theoretical tools created by Hart and Holmström are valuable to the understanding of real-life contract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potential pitfalls in contract design.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a contract to specify every eventuality, this branch of the theory spells out optimal allocations of control rights: which party to the contract should be entitled to make decisions in which circumstances? Hart's findings on incomplete contracts have shed new light on the ownership and control of businesses and have had a vast impact on several fields of economics, as well as political science and law.

노벨위원회가 밝힌 Hart와 Holmstrom의 공헌은 계약과 제도에 대한 직관과 학술적 성과다. 특히 Hart는 불완전계약 이론의 선구자로 모든 상황 (every eventuality)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의사결정권 최적배분 (optimal allocation of control rights)을 통해서 그 계약의 불완전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계약과 제도가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학, 정치학, 법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론을 정립했다. 불완전계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n incomplete contract has gaps, missing provisions, and ambiguities and has to be completed (by renegotiation or by the courts) with strictly positive probability in some states of the world.” (Hart, 1995)

11) <https://www.nobelprize.org/prizes/economic-sciences/2016/press-release/>

불완전계약 이론은 회사이론(the theory of firm) (Coase, 1937)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모든 가능한 조건(contingency)별로 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면 회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래를 내재화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필요할 때마다 독립적인 계약자들과 유연하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응하면 된다.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현실의 계약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회사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계약의 불완전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계약 이론은 Grossman & Hart (1986), Hart & Moore (1999) 등에 의하여 구체화되었고, Hart, Grossman, Moore 등은 물론 (Hart & Moore, 1999), 후속 연구자들에 의하여 크게 발전했다 (Nöldeke & Schmidt, 1995, 1998). 특히 금융 계약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론 논문들이 등장했고 (Aghion & Bolton, 1992; Dewatripont & Tirole, 1994), 이는 계량적으로 검증되며 현실 설명력을 인정받았다(Kaplan & Strömberg, 2003).

특히 벤처캐피털 계약에서 불완전계약이론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 벤처캐피털 계약에서 투자자의 권리는 불완전계약의 예측과 같이 다양한 조건(contingencies)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인 투자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적 성과 (financial measures of performance)
- 비재무적성과 (non-financial measures of performance)
- 현금 배당 충족 여부 (meeting dividend of nonredemption payment)
- 행위 (certain actions being taken)
- 자금조달 (offering of securities)
- 창업자 역할 (founder staying with firm)

이상의 조건에 영향을 받아 투자자가 주요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상 조항들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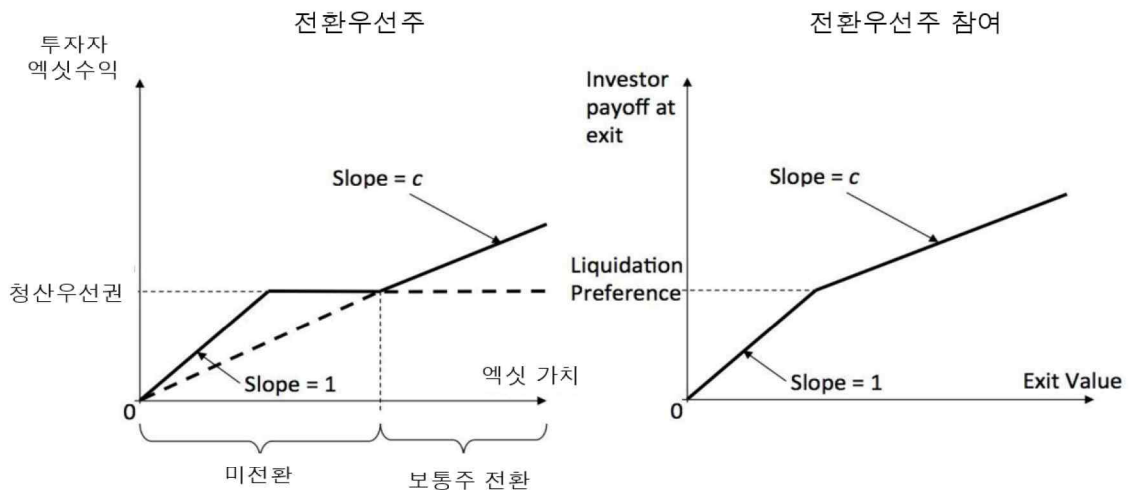
- 현금에 대한 권리 (cash flow rights)
- 투표 (voting rights)
- 이사진 (board rights)
- 강제매각 (right to force sale)
- 배당, 청산 (liquidation or dividend amount)
- 환매 (redemption rights)
- 약정취소 (release of committed funds)

- 기타 (any rights)

위 결과는 1999-2000 기간 중 14개의 주요 벤처캐피탈에 의한 119개 회사에 대한 213건의 투자계약서를 분석한 내용이며 (Kaplan & Strömberg, 2003) 최근의 벤처캐피탈 업계에 새로운 형식의 계약들이 출현하긴 했으나 현재도 크게 차이가 없다 (예: 한국벤처투자(주) 발간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¹²⁾) (Ewens et al., 2022).

실리콘밸리 VC 계약은 대부분 전환우선주 (convertible preferred equity) 혹은 그 변주 (variants)이며 여기에 참여권 (participation rights)¹³⁾, pay-to-play¹⁴⁾, 이사회 참여권 (board representation; investor seats on the startups' board)를 상당부분 포함한다. 참고로 아래 그림은 참여조항이 없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의 전환우선주 투자자 보수 구조를 보여준다 (Ewens et al., 2022).

〈그림 4〉 스타트업 투자자 엑시트 수익 도표(Exit payoff diagram)¹⁵⁾ (Ewens et al., 2022)



왼쪽 그래프는 전환우선주(수직축)에 대한 최종 보상을 스타트업의 엑시트 가치(수평축)의 함수로 보여준다. 투자자는 청산우선권(투자금액의 배수, 일반적으로 시드 또는 시리즈 A라운드 경우 1X)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대신 우선주를 스타트업 보통주의 일부 c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오른쪽 그래프는 투자자가 청산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는 참여형 전환우선증권에 대한 대가를 나타낸 것으로, 이후 전환 기준으로 나머지 가치에 참여한다.

12) http://www.kvca.or.kr/Program/board/listbody.html?a_gb=board&a_cd=12&a_item=0&sm=4_3&page=1&tm_num=0&po_no=5085

13)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로 우선주에 보통주의 권리를 추가로 주는 조항.

14) 투자자가 후속 투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현금흐름이나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박탈하는 조항.

15) Ewens, M., Gorbenko, A., & Korteweg, A. (2022). Venture capital contrac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43(1), 140.

실리콘밸리식 VC 계약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릇(instrument)가 된다. 다음 문제는 어떤 국내의 역량을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다. 다음 섹션에서는 국내의 전략적 자원과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자원기반이론(RBV: resource-based view) 관점에서 논의한다.

3) 자원기반이론(RBV)과 국내의 자원/역량 활용

RBV (자원기반이론, Resource-based view)는 경영학의 대표적인 이론이다(Barney, 1991, 2001; Barney & Arian, 2001; Conner & Prahalad, 1996; Dierickx & Cool, 1989; Mahoney & Pandian, 1992; Peteraf, 1993). 자원기반이론은 지속적인 경쟁우위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 경쟁력의 원천에 관한 이론이다. 자원기반이론은 동적역량(dynamic capabilities), 핵심역량 (core competence), 지식기반이론 (knowledge-based view) 등으로 확장되었다.

지속적인 경쟁우위가 없는 조직은 다른 조직에 의하여 경쟁에서 밀려나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 내에서 지속적인 혁신이 발생하게 되고 동적 효율성이 달성된다. 자원기반이론은 여러 갈래가 있다. 가장 대중적인 버전의 자원기반이론에 의하면 지속적 경쟁우위의 원천은 전략적 리소스로 결정되고, 전략적 리소스의 가치는 VRIN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 VRIN은 Valuable, Rare, Inimitable, Non-substitutable의 첫 글자에서 유래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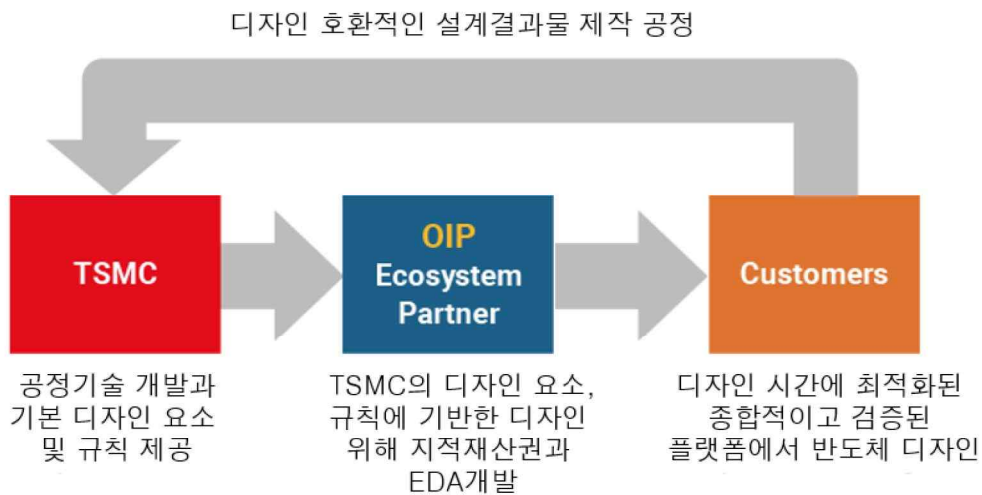
- Valuable: 조직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리소스나 역량의 가치
- Rare: 조직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역량의 희귀성
- Inimitable: 조직의 역량을 경쟁자가 쉽게 흡수할 수 있는지 여부
- Non-substitutable: 경쟁 역량에 의한 조직 역량의 대체가능성

결국 VRIN 조건을 충족하는 전략적 리소스를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직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가치 있는 리소스는 무형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브랜드명이나 기술적 노하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즈니의 콘텐츠와 이에 대한 활용 역량이다. 디즈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영화, 장난감, 테마파크, 게임, 비디오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설령 다른 기업이 디즈니의 일부 콘텐츠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디즈니처럼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파운드리 시장의 TSMC의 경우도 명확한 전략적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 VCA (Value Chain Aggregators)라 불리는 네트워크는 TSMC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스템, ASIC 및 신생 고객이 생산

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독립적인 설계 서비스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VCA는 TSMC의 OIP (Open Innovation Platform®) 내에 설계 지원 빌딩 블록을 통합하고 IP 개발, 설계 백엔드, 웨이퍼 제조, 조립 및 테스트를 포함하여 IC 가치 사슬의 각 링크에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5).

〈그림 5〉 TSMC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프로세스¹⁶⁾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자는 시스템 반도체 DSP (system semiconductor design solution partners),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SAFE (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 라는 제도로 각각 TSMC의 VCA와 OIP를 모방하려 하고 있다. 이외에도 TSMC는 세계 최초의 순수한 반도체 제조회사로서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신뢰자본도 중요한 전략적 리소스로 볼 수 있다. TSMC 사례는 기업의 전략적 리소스가 관행 (일상적인 경영활동), 업무 처리 프로세스, 문화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때 세계를 제패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원가절감, 린생산, 고품질, 제품개발 속도 등은 좋은 예다. 이제는 테슬라가 보유한 슈퍼충전 네트워크, 배터리 가치사슬, 데이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인공지능 역량, 브랜드가 자동차 업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리소스로 등장하고 있다. 테슬라나 TSMC의 사례는 전략적 리소스가 단순히 기업이 아닌 혁신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어떻게 이를 활용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특히 벤처생태계 경쟁력에 관한 시사점이 크다. 바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벤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한국의 혁신생태계의 전략적 리소스를 파악하고 이를 확장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벤처생태계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리소스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에 주목한

16) <https://www.tsmc.com/english/dedicatedFoundry/oip>

다. 첫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기업집단(소위 제벌)이다. 둘째, 한국이 미국, 중국과 함께 의미 있는 종합형, 포탈형 디지털 플랫폼을 유일하게 보유한 국가라는 점이다. 이하 각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술한다.

2. 대기업 집단 리소스와 벤처생태계: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집단의 전략적 리소스와 역량을 벤처금융으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win-win 전략 중 하나는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이다. 이는 Google, Intel, Qualcomm, Novartis, Johnson & Johnson, 삼성전자 등의 성공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이 한국에서 논쟁적인 주제인 것처럼 CVC 역시 이에 대한 논쟁이 만만치 않다. 이하 CVC에 대한 몇 가지 반대 논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안과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계열사 형태로 CVC를 보유하면 (예: 삼성) 금산분리 위반이 아니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예: LG)는 금산분리 위반이니 제약해야 한다는 금산분리 논리 (on banking/commerce separation doctrine)가 존재한다. 이는 지주회사 여부로 금산분리¹⁷⁾를 감별(鑑別)하자는 논리인데, 그 결과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규제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실제 국내 기업집단 대상 규제에 이러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근거가 대기업집단의 특징인데, 이 대기업집단을 정의하는 과정이 대기업집단에 영향을 끼치는 ‘동일인’을 지정하고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다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일종의 순환 논증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금융-산업 간 상호소유 및 지배를 제한하자는 금산분리 원칙과 지주회사 여부는 논리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그 관계가 매우 빈약하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 일반지주회사 CVC가 다른 네트워크 구조의 대기업 계열사 CVC 보다 부작용이 유의하게 큰 지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거나,
- 왜 계열사 CVC는 받아들일 수 있고, 지주회사의 CVC는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관련 문헌을 제시하거나,
- 주장하는 측에서 금산분리 여부 감별에 대한 어떤 권위 (authority)나 정당성 (legitimacy)를 가지고 있는지 라도 보이거나,

17) 혹은 “the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 지주회사체계보다 복잡한 구조의 기업집단에서는 왜 금산분리 측면에서 CVC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앞으로 네트워크 구조의 기업집단의 CVC는 모두 금지시킬 것인지

등과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위 설명이 없다면 구글이나 카카오가 하면 금산분리 측면에서 괜찮고, LG가 적극적인 CVC를 하면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논리적인 측면에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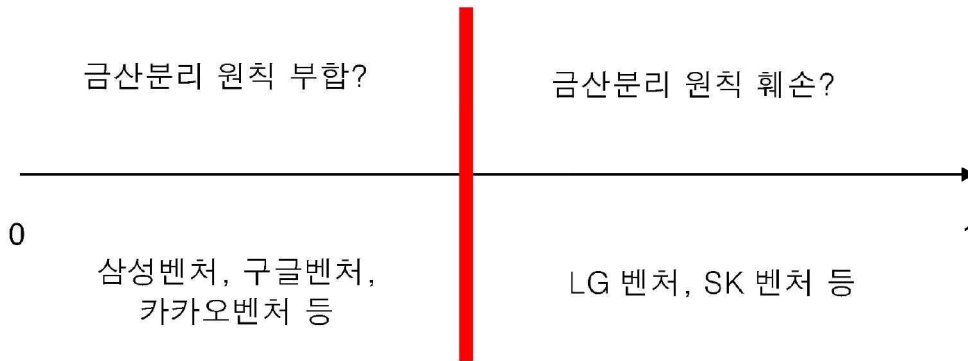
둘째, 일반지주회사 CVC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는 앞선 논의에 대한 추가 반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삼성벤처는 금산분리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나 LG벤처는 지주회사라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는 지주회사 CVC는 아예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는 감별 논리로도 볼 수 있다.¹⁸⁾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금산분리 위반을 감별하는 것은 흑백의 문제인가? 아니면 흰색부터 회색을 거쳐 검은색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문제인가?¹⁹⁾
- 후자가 맞다면 어디에 선(line)을 그어서 그 이전은 금산분리 적합, 그 이후는 금산분리 위반인지 감별할 수 있는 것인가?
- 선을 긋는 권위(authority, legitimacy)는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떤 논리로 “원칙을 훼손한다고”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가? (그림 6)

18) 물론 삼성벤처투자나 구글벤처 마저도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금산분리 강경론자’도 있고, 혹은 모든 CVC가 금산분리를 훼손한다는 ‘순수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히 소수이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논의에서 제외한다.

19)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산업분류 자체가 연속적(continuous) (Hoberg & Phillips, 2016)이다. 그렇다면 금산분리 원칙 훼손의 정도/여부도 연속적일 수밖에 없다. 금산분리가 도그마나 절대적인 원칙이 아님은 FRBSF의 다음 언급에서도 잘 드러난다: “But this separation is not absolute. An individual can legally own controlling interests in both a bank and a commercial firm.” (Krainer, 1998). 금산분리의 양상은 논의의 출발점인 은행-상업 분리에서 마저도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모습이다 (Cantillo, 1995).

〈그림 6〉 금산분리 원칙 부합여부에 대한 다양한 사례



금산분리 원칙부합 여부의 보편타당한 기준은 어디쯤인가?

금산분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진히 유의미한 원칙인 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서 신성불가침의 도그마처럼 간주하며 특정 해석을 강요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금산분리는 이진법이 아니라 연속적(continuous)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찬반론의 대립구도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실무적으로도 어디까지 금산분리를 허용하고 제한할 것인가가 논쟁이 된다는 점에서 이미 연속적인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연속적인 특정 지점에 선을 긋고 (현재는 LG벤처와 삼성벤처 및 카카오은행의 사이) 그 선을 넘으면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고 그 선을 넘지 않으면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을 주장하는 측은 주장의 근거, 무엇보다도 어디에 선(line)을 긋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선이 이미 그어져 있으니, 즉 규제 때문에, 그 선을 지켜야 한다는 동어반복적인 논리 역시 규제를 검토하는 국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²⁰⁾ 애당초 은행에서 출발한 금산분리 원칙 훼손 여부(banking/commerce separation doctrine)는 쉽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은행 이외의 분야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게다가 최근 학계와 글로벌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금산분리 원칙과 충돌하는 핀테크 등 혁신기술의 도래와 함께 금산분리 재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다 아니다”를 쉽게 선언하는 것, 특히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Baradaran, 2011; Ford, 2019; Khan, 2019; OECD, 2020).

20) 예를 들어 어차피 수정될 현행법이 아니라 본인이 주장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설명하고 왜 삼성벤처스는 금산분리 *원칙*에 부합하고 LG벤처스는 금산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지 등을 명쾌하게 설명해야 함.

셋째, “벤처기업의 부진은 자본 부족이 아니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다.²¹⁾ 지주회사 형태 대기업집단의 CVC는 원칙 훼손이라는 일종의 낙인(stigma)을 부여하는 몇몇 금산분리 감별론의 의견 보다는 진일보한 의견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볼만한 의견이다. 하지만 많은 VC들이 펀드레이징(fundraising)을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투자 계획(investment thesis)과 투자 모형(company making strategy)을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현실과 배치되는 주장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서 투자할 기업이 없다고 느끼는 VC가 있다면 펀드레이징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벤처기업 투자는 좋은 기업을 골라서 분산 투자를 하는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니다. 상향의 여지(company making)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VC가 기업가와 같이 가치상승(value up)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사실 VC의 능력과도 직결되어 있다(eg, Chesbrough (2002), Hellmann & Puri (2002)).

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로서의 CVC와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로서의 일반 VC는 그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 설령 재무적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할 기업이 없다고 해도 ‘돈의 성격이 다른’ 전략적 투자자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벤처기업 부진은 자본 부족이 아니라 투자할 기업이 없어서”라는 주장은 일종의 가설이다. 그렇다면 이론적 도출과 경험적 근거(ie, data)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VC의 핵심 가치인 company making의 최고 역량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하여 비재무적 자원(non-financial resources) 관점²²⁾에서도 CVC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다양하고, 지금도 투자 프로젝트가 매력적이거나 초기 실적이 우수하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명제도 비슷한 맥락이다.²³⁾ 추가로 상기 의견은 company maker로서의 VC의 적극적인 역할은 물론 스타트업 펀딩에서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²⁴⁾와 시장디자인 실패(market design failure)와 상충하여 해당 가설을 제시하는 측이 구체적인 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지주회사 100% 완전자회사, 200% 부채비율, 40% 외부자금 조달 제한(속칭 “안전장

21) <http://cej.or.kr/62859?fbclid=IwAR1ASTfxxFgEeJrbDTtBaxvs5MJbkCfrNAqHNUm9VGpHT5TfpRpnUbLjg70>

22) 예를 들어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 동적역량이론(dynamic capabilities) 등.

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507431>

24) 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는 스타트업 펀딩 계약 이외에 금융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은 신용할당(credit rationing)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을 과소공급(undersupply)(Stiglitz & Weiss, 1981). 따라서 일반 금융시장에서 마저도 매력적인 프로젝트라고 담보없이 펀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이는 국내 중소기업 금융의 심각한 과제이며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치”) 관련이다. 이는 메가펀드를 통하여 전략적인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차단하는 심각한 조항이다. 투자규모가 큰 대체투자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대상에 대한 분산투자도 어렵게 만드는 규제다.²⁵⁾ 물론 다양한 금산분리 감별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위 안전장치 하에서 CVC 규제를 완화한 분재인정부의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향후 국내 CVC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펀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Limited Partners (LP)로부터 펀드레이징을 해야 하는데 LP들로부터 40%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대규모 펀드 구성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평판과 능력이 있는 LP들은 일정 규모 이상만 투자하므로 이들로부터 펀딩을 받는 것도 불리하다. LP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도 경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CVC가 가진 자금을 스스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CVC가 가진 자금은 부채와 자본금의 합체인데 200% 부채 비율 때문에 부채를 조달하는데 한계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100% 완전자회사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아니면 자본금을 투입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100% 완전자회사 + 200% 부채비율 + 40% 외부자금 규제 조합은 CVC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조항이다. 비전펀드 등 글로벌 메가펀드와의 경쟁이 불가능하다. 핵심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다분히 머니게임이다. CVC가 구글처럼 DeepMind 같은 회사를 전략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CVC 들이 존재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위와 같은 규제로 인하여 CVC 제도는 벤처지주회사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 한편 VC간에도 경쟁이 치열(Phalippou, 2010)하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외부자금 조달 관련, 경실련은 “CVC 조성 펀드에 외부기관의 참여를 금지한다고 CVC와 외부기관의 공동투자를 가로막는 것도 아니다. 외부기관이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CVC와 신디케이트를 구성해서 같은 벤처회사에 투자하면 되기 때문”을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글이 애플하고 신디케이트를 만들어서 틱톡에 투자하면 금산분리 위반이 아니고, 구글이 펀드를 만들어서 애플 자금을 넣어서 틱톡에 투자하면 금산분리 위반이 되는 것인가? 게다가 지분구조와 이에 따른 의사결정이 복잡해지는 신디케이트와 펀드를 통한 투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사결정 복잡성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은 물론 VC 투자에서 신디케이션의 특수한 역할과 보완성(complementarity)을 간과한 것이다(Brander et al., 2002; Das et al., 2011; Manigart et al., 2006).

다섯째, 현행 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20%로 제한 관련이다. 이는 지식전이 (Knowledge spillover²⁶⁾)와 분산투자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제한이다. 이하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자.

25) 창투사(1000%)나 신기사(900%) 사례 참고.

26) See Agarwal et al., 2007; Audretsch & Keilbach, 2008; Audretsch & Lehmann, 2005; Kang et al., 2011

① Knowledge spillover (지식전이):

능력 있는 VC와 능력 없는 VC를 결정하는 요소는 지식전이(Knowledge spillover)이다. VC에 있어서 Knowledge spillover는 A라는 회사에서의 투자경험으로 B라는 회사의 가치상승을 시키는 VC의 역량을 결정한다. CVC가 해외투자 통하여 습득한 지식으로 국내 투자회사의 가치상승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전략적 투자대상을 ‘구매나 선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분산투자:

금융에서 성과와 위험 관리의 핵심은 분산투자다. 해외투자는 분산투자에 매우 중요하다. 국내외 투자 대상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서 CVC는 펀드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20% 제한은 펀드 운용의 기본인 분산투자(diversified portfolio)에 대한 제약이다.

③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국내 벤처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펀드에 능력있는 글로벌 VC를 Co-GP (co-general partners)로 끌어들이어서 글로벌 투자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 VC의 역량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국내 스타트업의 세계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Geographic diversity of CVC investments can enhance technological performance.” (Belderbos et al., 2018). 그러나 해외투자를 20%로 제한하면 글로벌 VC들이 협력을 할 이유가 없다.

여섯째, 재벌 대기업의 벤처생태계 잠식과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의견 관련이다. 하지만 경제력 집중을 막고 상생의 계약 구조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CVC를 오히려 적극 활용해야 한다. CVC는 벤처생태계를 강화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안에 가깝다. 모험자본으로서 VC는 태생적으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단독으로 투자하지 않고 여러 VC가 연합하여 투자를 집행한다. 이는 일반 VC와 CVC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다. 대기업이 CVC를 통하여 벤처생태계를 잠식할 우려가 심각하다면 벤처생태계가 CVC를 반대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반대이다. 스타트업에 따라 “재무적” 투자보다도 오히려 CVC에서 “전략적” 투자를 받는 것을 매우 원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 문제는 거시적으로 깊이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긴 하다. IPO의 구조적 한계로 구글이나 삼성 등 대기업에 투자를 받거나 아예 회사를 넘겨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아지는 현실이다²⁷⁾.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CVC는 벤처생태계 잠식이 아닌 벤처생태계 활성화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기술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는 스타트

업의 경우 글로벌 VC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기업으로는 ‘배달의 민족’의 우아한형제들이 2021년 3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7조 6735억원이라는 초대형 규모로 인수되었다. 그 보다 한달 전에는 영상 메신저 ‘아자르’의 운영사인 하이퍼커넥트가 나스닥 상장사 매치그룹(Match Group)에 1조 9330억원에 인수되기도 했다. 이제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국내 경제에 국한해서만 생각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타, 재벌의 사금고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사금고”라는 표현은 성립할 수 없으니 여기서 사금고의 주체인 재벌은 총수일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금고화를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투자한 지분에 비하여 과도한 현금흐름의 권리(cash flow right)를 가지거나 지배력(control right)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분에 비하여 과도한 현금흐름 권리나 지배력을 갖는다면 이는 CVC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논리로 CVC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CVC가 사금고화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가능한데 이에 대한 감시는 이사회와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에 충실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SK 등에서 총수일가가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총수일가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부당한 이익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당이익 메커니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학술적/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고려 CVC 제도의 허점을 발굴/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총수의 부당이익 메커니즘이 CVC에 특화된 것인지 아니면 보다 큰 공정경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지 고려해야 한다.

총수의 부당이익을 막기위하여 CVC 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무딘(blunt) 전략일 우려도 있고 스타트업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총수만을 위한 것인지 스타트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스타트업 업계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확실하다.²⁸⁾

궁극적으로 총수일가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공동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관련(Baron, 1995b, 1995a; Porter & Kramer, 2011) 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CVC를 통한 총수의 부당이익을 막기 위해서 CVC 자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보다, 기존 공정거래법제의 적극적 활용이나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간 주주권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7) Why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Listed American Firms Matters (The Economist, 2017)

28) Evidence-based policy.

3. 플랫폼 경쟁력의 중요성과 다각화 전략

벤처생태계 발전과 관련해서 플랫폼의 다각화전략과 비즈니스그룹화는 중요한 주제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투자, 인력교류 등 국내 플랫폼들의 벤처금융에서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먼저 플랫폼 성장의 핵심인 개방혁신(open innovation)과 다각화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는 최근에 특히 논쟁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플랫폼들의 다각화전략과 이로 인한 기업집단화와 관련 기업집단 일반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집단(business group)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르는 상태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무엇보다 기업집단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이 장기적 사회후생에 기여하는가? 등 중요한 질문에 관하여 학술적 진센시스는 부족한 상태다(eg. Carney et al. (2011) for a meta-analysis).

여기에는 데이터, 계량경제학적, 그리고 특히 컨텍스트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등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률 및 정치 시스템과 같은 외부 제도들(external institutions)은 신흥 시장의 비즈니스 그룹 형성 및 발전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기업집단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련(relatedness)” 다각화에 관한 전략과 성과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하다(Rumelt 1974; Lang and Stulz 1994; Berger and Ofek 1995). 이는 다음과 같은 어려운 학술적 도전 때문이다.

- 선택편의(Selection biases) (e.g., Villalonga 2004a; Campa and Kedia 2002; Maksimovic and Phillips 2002; Graham, Lemmon, and Wolf 2002)
- 측정의 문제(Measurement issues) (Villalonga 2004b; Custodio 2014),
- 조건의 문제(Contingencies): competition (Santalo and Becerra 2008), economic conditions (Dimitrov and Tice 2006; Yan, Yang, and Jiao 2010; Hann, Ogneva, and Ozbas 2013; Kuppuswamy and Villalonga 2010; Hovakimian 2011), internal labor markets (Neffke and Henning 2013; Tate and Yang 2015), equity risks (Hund, Monk, and Tice 2010), and governance strength (Hoechle et al. 2012).

학자들은 관련 다각화(related diversification)는 옹호한다. 관련 다각화는 기업전략(corporate strategy) 그 자체이다. 그러나 관련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추정하느냐의 문제가 존재한다. 단순히 SIC 코드 등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각화의 관련성을 정의하는 것은 학술적이지도 실무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경영학자들의 경우 전략적 리소스 측면에서의 관련성(Resource relatedness)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전략적 리소스 측면에서의 관련성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리소스 재배치 비용(Redeployment cost) (Helfat & Eisenhardt, 2004; Sakhartov, 2017;

Sakharov & Folta, 2014, 2015)

- 리소스 필요 요건의 공통성 (The similarity of their resource requirements) (Rumelt, 1974)

그렇다면 현재 국내외 플랫폼들의 거침없는 다각화는 관련다각화(related)인가 비관련다각화(unrelated)인가? 플랫폼들의 다각화는 리소스에 기반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리소스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의 전략적 리소스 역시 데이터와 데이터과학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국내 플랫폼들의 다각화전략은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데이터와 관련 역량을 거래하지 않고 굳이 기업전략이나 회사의 경계(firm boundary) 확장을 통해서(Coase, 1937; Williamson, 1975) 데이터와 데이터과학 역량을 “거래”할까? 그 이유는 데이터 거래에 대한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조직 내에서의 거래가 오히려 효율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데이터의 특성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표 4를 참고한다.

〈표 4〉 데이터 특성과 데이터 거래의 특징²⁹⁾

데이터 특성	설명	데이터 거래의 특징
비가역성	가공이 이루어질수록 범용성이 저하됨	원시데이터에 대한 수요 증가
유연성	분할이나 결합, 가공 등 변형이 용이	협상에 의한 맞춤형 거래 발생 가격 산정의 어려움
결합성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가치가 변화	표현 형식의 일치(표준화) 필요
경험성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	품질 및 가치 평가 어려움

데이터는 거래가 이루어져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데이터는 동일한 필드값을 주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늘어나면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데이터는 공급자(또는 최초 데이터 생성자) 주도의 시장으로 유가증권 시장과 같이 매매를 통한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 시장은 매도자/매수자가 상시 존재하거나 딜러 등의 역할로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데이터 시장은 매수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수요가 대부분 해당 데이터의 사용자 그룹에 한정되어 있어 유가증권 시장과 같은 딜러 또는 시장조성자 제도 등을 도입할 수는 없다. 즉, 의료 데이터는 의료업계 종사자들에게, 금융데이터는 금융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가치를 가지

2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12-21). VTW 데이터 통합 거래를 위한 환경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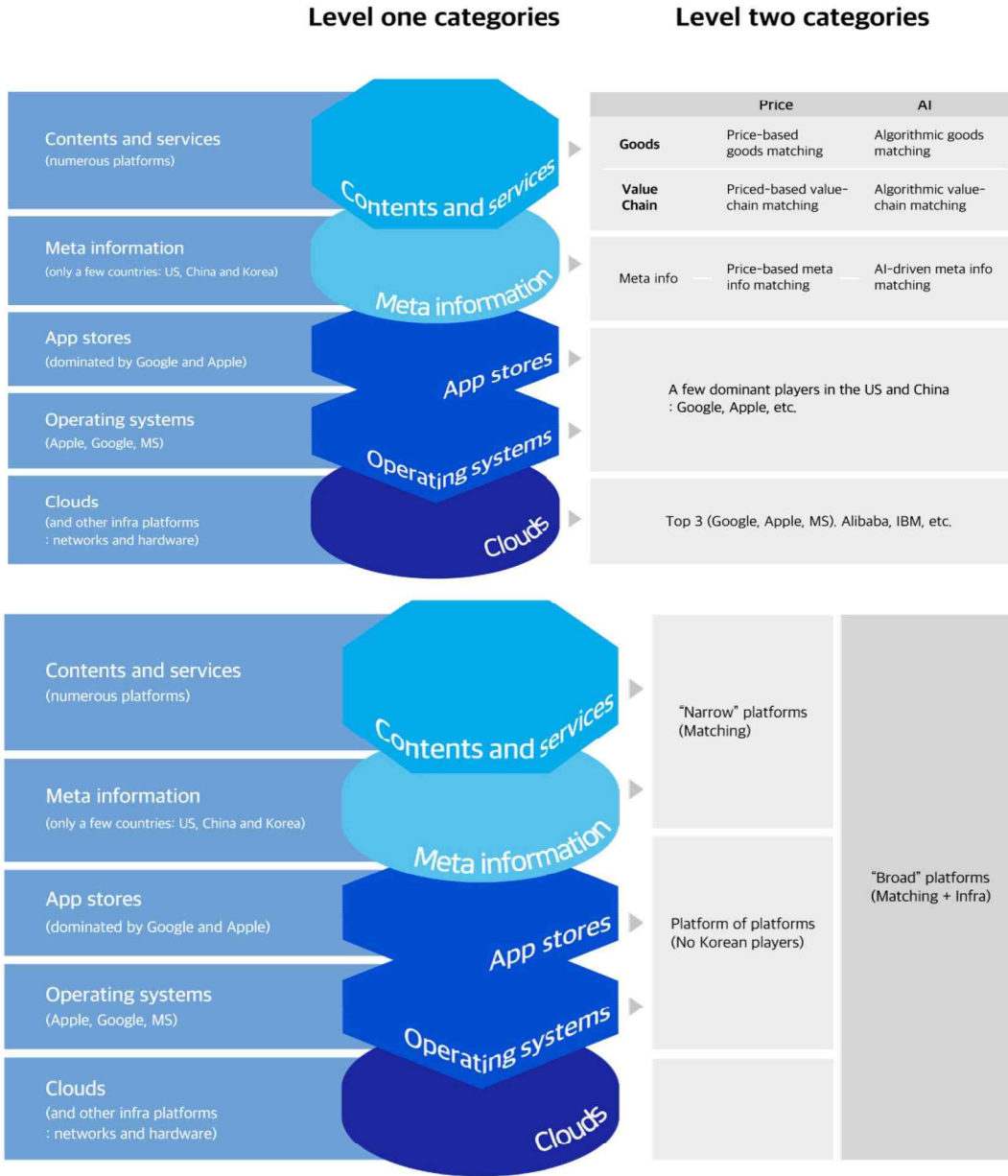
지만 타 영역에서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과 같이 보편적인 수요자를 고려하여 시장이 설계되기 어렵다. 이러한 데이터의 특수성은 정부 주도로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여, 2022년 1월 5일 전면 시행된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이 증명하고 있다. 데이터 자체가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만으로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되었겠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그 가치는 데이터의 소유 자체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소유나 활용 주체와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도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외부자본시장(external capital market)의 실패와 불완전성으로 기업들이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을 형성하고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이 형성되었다(Almeida & Wolfenzon, 2006; Carney et al., 2011; Gertner et al., 1994; Hoshi et al., 1991; Khanna & Yafeh, 2007; Stein, 1997). 비슷한 논리로 외부데이터시장(external data market)의 실패와 불완전성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내부데이터시장(internal data market)을 형성하고 이를 위해 다각화를 통한 대기업집단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벤처금융과 생태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플랫폼의 유인구조와 다각화전략을 활용하여 벤처생태계 금융 공급의 원천은 물론 인수합병 등에 대한 시장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기반 핵심 전략적 자산이 벤처생태계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플랫폼 기업들은 벤처생태계와 금융시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이 국내 벤처생태계의 경쟁력을 상당 부분 결정할 것이다. 다만, 최근 IDC 화재로 인한 소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플랫폼 기업의 금융 시장 지배력이 커질 경우, 재난 상황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이버 공격 등이 금융시장 전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Eisenbach, Kover and Lee 2021 Cyber Risk and the US Financial System: A Pre-Mortem Analysis NY Fed Staff Report)

벤처생태계와 플랫폼 간의 상생과 Win-Win 구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들이 처한 산업구조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림 7을 참고하면, 우리가 흔히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기술이나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비즈니스와 연관 산업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간에도 위계구조와 마켓파워가 다르며, 특히 OS(Operating System)을 가진 해외 빅테크와 국내 플랫폼 기업의 산업구조적 역할과 시장위치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림 7〉 다양한 플랫폼 분류³⁰⁾



30) 다음 논문에서 재인용: 강형구, 강창모 and 전성민. (2022). 온라인 플랫폼의 분류 프레임워크: 국내 플랫폼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31(1), 59-90.

4. 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와 벤처금융

마지막으로 중복 방지를 막고 벤처 생태계 발전을 위한 민관의 벤처금융 역량 결집을 위한 투자플 운영을 제안한다. 아주 초기의 자본공급은 정부 주도, 그 외의 기금 들은 투자플로 부분 통합한다. 투자플 운영은 민간 금융기관에게 위탁(OCIO: Outsourced CIO)한다. 관련 구조는 그림 8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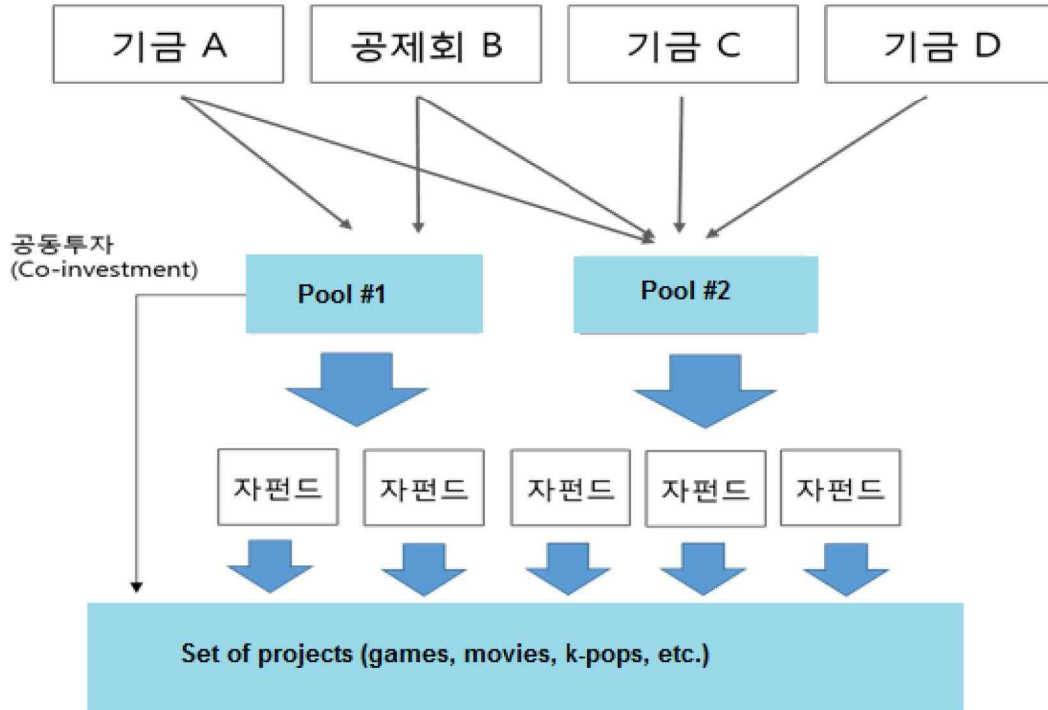
벤처 투자플은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연기금 투자플을 참고하여 디자인한다. 투자플은 민간 출자자들을 통한 재원확대와 업무 및 투자의 중복을 막는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수행한다. 현재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체계는 연기금투자플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모태펀드는 출자하는 각 LP들의 자금이 계정별로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기금 투자플은 그 자금들이 한데 모여 통합펀드(상위펀드)를 구성하고 다시 하위펀드로 배분되는 구조다.

관련된 사례로 덴마크 성장 펀드에서 운영하는 DVK-I의 수익구조를 참조할 수 있다. DVK-I의 경우 덴마크 연기금의 벤처 시장 확대를 목표로 출범하였으나, 초기 단계에서 연기금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VK-I 운영 시 지분형으로 참여하는 방식 외에도 지분형과 대출형, 즉 일부의 경우 선순위 확정 수익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 구조를 “트랜치(tranche)”화 하였다. 이 때 대출형의 경우 덴마크 국채 10년물 + 150bp로 책정된다. 연기금 입장에서 기존 채권시장에서 기대 가능한 금리 대비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덴마크 성장 펀드가 갖는 암묵적 정부 보증으로 인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신용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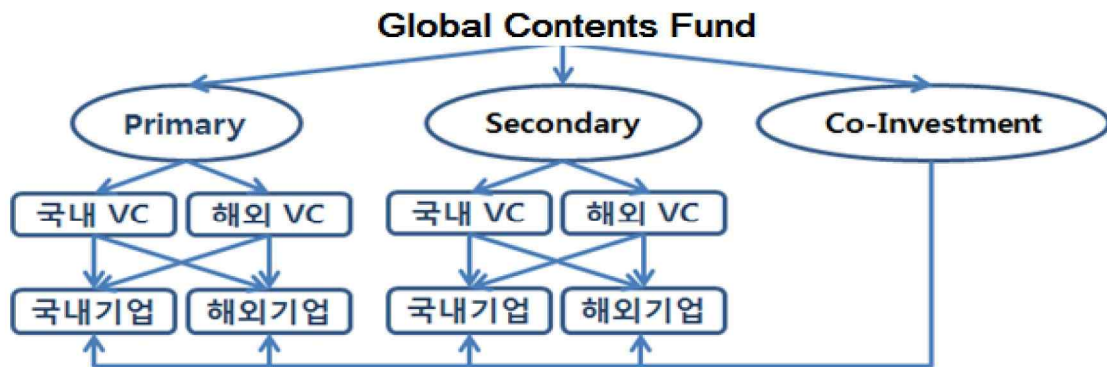
따라서 벤처금융 투자플에서 국내 연기금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DVK-I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같은 대출형, 혼합형, 지분형 등의 다양한 솔루션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투자플의 참여방식을 대출형과 지분형으로 나눈 후, 민간 출자자별로 각 기관의 위험 추구 성향에 맞게 대출형, 지분형, 혹은 각 유형 별 혼합 투자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 좀 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형태로 투자플의 수익 구조가 풍성해질 경우, 관련 기관들은 민간 재원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장기 채권까지 발행할 수 있다.

〈그림 8〉 OCIO(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개념도



〈그림 9〉 글로벌 펀드 투자 개념도



벤처금융 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비전펀드 등과 경쟁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 펀드가 필요하다. 세계화는 벤처금융과 생태계 성공의 필수다. 여기서 기업의 세계화와 금융의 세계화는 서로 중요한 보완재다. 글로벌 펀드 조성에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중규모의 해외펀드와 협력해야 한다. 너무 유명한 VC는 피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전이(spillover)효과를 극대화해

야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펀드의 출범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중심의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다. 수익성 중심의 글로벌 펀드를 통해, 민간 LP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그리고 글로벌 벤처캐피털들의 국내 산업 참여 유도하여, 회수 시장을 활성화한다. 글로벌 금융의 중요성은 넷플릭스를 봐도 된다.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이 국내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측면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운용사(FoFs, 벤처캐피털)들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의 글로벌 프랙티스를 도입한다. 그래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투자·사후관리·LP대응 등에서 체계적인 글로벌화를 추구한다. 국내 기관들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벤처캐피털들로부터의 선진화된 투자 전략을 습득한다.

셋째, 회수의 다변화다. 해외 투자자 및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컨더리, 국내 기업들의 해외 M&A 및 IPO 등 회수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 국내시장에서는 유의미한 규모의 세컨더리 시장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펀드는 J-곡선의 완화를 위해 세컨더리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에 세컨더리 투자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전이(spillover)효과를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다. 글로벌 모태펀드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는 국내 벤처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후속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뛰어난 VC는 전이(spillover)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한다.³¹⁾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포트폴리오회사에서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국내 콘텐츠 생태계에 spillover 해야 한다. 글로벌화된 콘텐츠 금융 시스템이 국내 개발사와 창작자를 위한 거대한 넷플릭스 역할을 해야 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벤처생태계와 벤처금융의 양적인 성장을 고찰하고 질적, 효율적 벤처금융 생태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 경쟁력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먼저 실리콘밸리식 벤처캐피털 계약을 적극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31)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투자하면서 생성된 지식을 B라는 회사의 성공을 위해 활용한다. 여기서 A는 해외회사, B는 국내회사라고 해보자. 한편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투자자들과 공동투자를 하며 spillover 채널이 될 수 있다.

실리콘밸리식 벤처캐피털 계약의 제도적 뒷받침 하에 전략경영의 지원기반이론(RBV: resource-based view)에 근거 국내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의 전략적 리소스와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OCIO를 통한 벤처금융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실리콘밸리식 벤처캐피털 계약의 특징은 투자자의 현금에 관한 권리(cash flow rights)와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control rights)의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별개로 계약된다는 점이다. 이는 교조적인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법리와 대비되지만 실리콘밸리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벤처 계약의 실무를 반영하고 학술적으로 불완전계약이론 등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도 부합한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내 대기업들의 전략적 리소스를 벤처생태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관련 규제를 대폭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구글, 인텔, 쉐일의 사례와 같은 세계적인 CVC가 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편 플랫폼은 모든 국가에서 벤처생태계의 금융, 투자, 엑시트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데이터 관련 플랫폼의 다각화 전략을 지원하여 벤처생태계와 win-win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한계인 플랫폼의 플랫폼(platform of platforms) 분야에서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벤처생태계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미 연기금 투자펀드 형태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OCIO제도를 벤처생태계에 도입하면 관련 금융역량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 논문으로 계량적 논의를 생략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 등으로 본 논문의 주요 시사점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론 수립을 위한 사례기반 질적연구(Eisenhardt, 1989; Eisenhardt & Graebner, 2007)를 통해서 구체적인 플랫폼 전략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CVC 출현을 위한 전략, OCIO 디자인 연구를 수립할 수 있다. (끝).

참고문헌

- Accenture. (2020). *Increasing Competition in Semiconductor Industry*.
<https://www.accenture.com/us-en/blogs/high-tech/semiconductor-competition-increasing>
- Agarwal, R., Audretsch, D., & Sarkar, M. B. (2007). The process of creative construction: Knowledge spillovers,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1(3-4), 263-286.
- Aghion, P., & Bolton, P. (1992). An Incomplete Contracts Approach to Financial Contracting.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9(3), 473-494. <https://doi.org/10.2307/2297860>
- Almeida, H. V., & Wolfenzon, D. (2006). A theory of pyramidal ownership and family business groups. *The Journal of Finance*, 61(6), 2637-2680.
- Audretsch, D. B., & Keilbach, M. (2008). Resolving the knowledge paradox: Knowledge-spillover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Research Policy*, 37(10), 1697-1705.
- Audretsch, D. B., & Lehmann, E. E. (2005). Does the 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 hold for regions? *Research Policy*, 34(8), 1191-1202.
- Baradaran, M. (2011). Reconsidering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80, 385.
- Barney, J. B.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 Barney, J. B. (2001). Resource-based theories of competitive advantage: A ten-year retrospective on the resource-based view. *Journal of Management*, 27(6), 643-650.
- Barney, J. B., & Arian, A. M. (2001). The resource-based view: Origins and implications. *The Blackwell Handbook of Strategic Management*, 5, 124-188.
- Baron, D. P. (1995a). Integrated strategy: Market and nonmarket component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7(2), 47-65.
- Baron, D. P. (1995b). The nonmarket strategy system. *MIT Sloan Management Review*, 37(1), 73.
- Belderbos, R., Jacob, J., & Lokshin, B. (2018). 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investments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Geographic diversity and the interplay with technology allian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3(1), 20-34. <https://doi.org/10.1016/j.jbusvent.2017.10.003>
- Brander, J. A., Amit, R., & Antweiler, W. (2002). Venture-Capital Syndication: Improved Venture Selection vs. The Value-Added Hypothesis.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 17(3), 423–452. <https://doi.org/10.1111/j.1430-9134.2002.00423.x>
- Cantillo, M. (1995). *The Rise and Fall of Bank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1890–1920*.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Carney, M., Gedajlovic, E. R., Heugens, P. P., Van Essen, M., & Van Oosterhout, J. (2011). Business group affiliation, performance, context, and strategy: A meta-analysi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4(3), 437–460.
- Chesbrough, H. (2002, March 1). Making Sense of Corporate Venture Capital.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 2002. <https://hbr.org/2002/03/making-sense-of-corporate-venture-capital>
- Chun, K. H. (2021). Validity of Investor Protection Arrangements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Investor.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40(3), 71–124.
- Coase, R. 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16), 386–405. <https://doi.org/10.2307/2626876>
- Conner, K. R., & Prahalad, C. K. (1996). A resource-based theory of the firm: Knowledge versus opportunism. *Organization Science*, 7(5), 477–501.
- Das, S. R., Jo, H., & Kim, Y. (2011). Polishing diamonds in the rough: The sources of syndicate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20(2), 199–230. <https://doi.org/10.1016/j.jfi.2010.08.001>
- Dewatripont, M., & Tirole, J. (1994). A theory of debt and equity: Diversity of securities and manager–shareholder congruenc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4), 1027–1054.
- Dierickx, I., & Cool, K. (1989). Asset Stock Accumulation and Sustainability of Competitive Advantage. *Management Science*, 35(12), 1504–1511. JSTOR.
- Eisenhardt, K. M. (1989). Building theories from case study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4), 532–550.
- Eisenhardt, K. M., & Graebner, M. E. (2007). Theory building from cas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0(1), 25–32.
- Ewens, M., Gorbenko, A., & Korteweg, A. (2022). Venture capital contrac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43(1), 131–158. <https://doi.org/10.1016/j.jfineco.2021.06.042>
- Ford, C. (2019). *The Banking/Commercial Separation Doctrine in Comparative Perspective* (SSRN Scholarly Paper ID 3506371).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https://doi.org/10.2139/ssrn.3506371>
- Gertner, R. H., Scharfstein, D. S., & Stein, J. C. (1994). Internal versus external capital marke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4), 1211–1230.
- Grossman, S. J., & Hart, O. D. (1986). The costs and benefits of ownership: A theory of vertical

- and lateral inte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4), 691–719.
- Hart, O. (1995). *Firms, Contracts, and Financial Structure*. Clarendon Press.
- Hart, O., & Moore, J. (1999). Foundations of incomplete contract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6(1), 115–138.
- Helfat, C. E., & Eisenhardt, K. M. (2004). Inter-temporal economies of scope, organizational modularity, and the dynamics of diversific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5(13), 1217–1232.
- Hellmann, T., & Puri, M. (2002). Venture capital and the professionalization of start-up firms: Empirical evidence. *The Journal of Finance*, 57(1), 169–197.
- Hoberg, G., & Phillips, G. (2016). Text-Based Network Industries and Endogenous Product Differenti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4(5), 1423–1465.
<https://doi.org/10.1086/688176>
- Hoshi, T., Kashyap, A., & Scharfstein, D. (1991). Corporate structure, liquidity, and investment: Evidence from Japanese industrial group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1), 33–60.
- Kang, H.-G., Burton, R. M., & Mitchell, W. (2011). How potential knowledge spillovers between venture capitalists' entrepreneurial projects affect the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VC funds when VC effort has value.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5(3), 227–246.
<https://doi.org/10.1002/sej.115>
- Kaplan, S. N., & Strömberg, P. (2003). Financial contracting theory meets the real world: An empirical analysis of venture capital contract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0(2), 281–315.
- Khan, L. M. (2019). The separation of platforms and commerce. *Columbia Law Review*, 119(4), 973–1098.
- Khanna, T., & Yafeh, Y. (2007). Business groups in emerging markets: Paragons or parasit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5(2), 331–372.
- Krainer, J. (1998).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FRBSF Economic Letter*.
- Mahoney, J. T., & Pandian, J. R. (1992). The resource-based view within the conversation of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3(5), 363–380.
- Manigart, S., Lockett, A., Meuleman, M., Wright, M., Landström, H., Bruining, H., Desbrières, P., & Hommel, U. (2006). Venture Capitalists' Decision to Syndicat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2), 131–153. <https://doi.org/10.1111/j.1540-6520.2006.00115.x>
- Nöldeke, G., & Schmidt, K. M. (1995). Option contracts and renegotiation: A solution to the hold-up problem.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163–179.
- Nöldeke, G., & Schmidt, K. M. (1998). Sequential investments and options to own.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633–653.

OECD. (2020). *Digital disruption in financial markets—OECD*.

<http://www.oecd.org/daf/competition/digital-disruption-in-financial-markets.htm>

Peteraf, M. A. (1993). The cornerstones of competitive advantage: A resource-based view.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3), 179–191.

Phalippou, L. (2010). Venture capital funds: Flow–performance relationship and performance persistenc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4(3), 568–577.

<https://doi.org/10.1016/j.jbankfin.2009.08.022>

Porter, M. E., & Kramer, M. R. (2011, January 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2011.

<https://hbr.org/2011/01/the-big-idea-creating-shared-value>

Rumelt, R. P. (1974). *Strategy,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Sakhartov, A. V. (2017). Economies of scope, resource relatedness, and the dynamics of corporate diversific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8(11), 2168–2188.

Sakhartov, A. V., & Folta, T. B. (2014). Resource relatedness, redeployability, and firm valu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5(12), 1781–1797.

Sakhartov, A. V., & Folta, T. B. (2015). Getting beyond relatedness as a driver of corporate valu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6(13), 1939–1959.

Stein, J. C. (1997). Internal capital markets and the competition for corporate resources. *The Journal of Finance*, 52(1), 111–133.

Stiglitz, J. E., & Weiss, A. (1981).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1(3), 393–410.

The Economist. (2017, April). Why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listed American firms matters.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17/04/22/why-the-decline-in-the-number-of-listed-american-firms-matters>

Williamson, O. E.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A Study in the Internal Organizations*. Free Press.

강형구, 강창모, & 전성민. (2022). 온라인 플랫폼의 분류 프레임워크: 국내 플랫폼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31(1), 59–90.

CNBC. (2022, January). Amazon, Microsoft and Alphabet went on a buying spree in 2021 despite D.C.’s vow to take on Big Tech. <https://www.cnn.com/2022/01/22/amazon-microsoft-alphabet-set-more-deals-in-2021-than-last-10-years.html>